

현안분석 2010-08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최 환 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Legal System to Advancement of
Standard authentication System

연구자 : 최 환 용(연구위원)
Choi, Hwan-Yong

2010. 10. 29.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안보 등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은 상품수출시 일종의 통관보증서로 작용하기도 함
- 국내 인증제도에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으며 각 부처별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다수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
- 인증제도의 분산과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부실 인증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
-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이 국제적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 인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저하됨
-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외국과의 다자간 협정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본 연구는 다수의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인증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 규격에 적합한 기준인증제도 수립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인증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중복되는 인증절차의 정비가 요청됨
 - 인증의 종류가 과다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인증절차나 인증항목이 중복되어 기업부담이 가중됨
-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 요청
 -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 부족
 - 인증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허위인증
 - 심사원 자격미달 등의 문제점 발생
- 국가표준·인증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 부처별 독자운영으로 인증의 중복·상이 현상 발생
 - 인증제도 신설시 부처 간의 협의나 종합적인 검토 미흡
- 인증제도와 표시제도의 연계 운용 필요
 -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표시제도와 인증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허위나 부실한 인증표시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인증기업에 대한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장치 마련

Ⅲ. 기대효과

- 사업자의 자기확인·자기승인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개별 제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감독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요청
- 기준인증제도를 기술장벽의 일종으로 보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표준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필요
- 제품별 기준인증제도가 글로벌화, 통일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의 기술기준, 기준인증시스템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필요

▶ 주제어 : 기준인증제도, 국제표준, 기술장벽, 표시제도, 신제품예비인증제도

Abstract

I. Background and Objectives

- Most countries are utilizing their own authentication systems as technology barriers in trade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consumers' rights, conserving the environment and maintaining security.
- Internationally recognized authentications are considered as a customs clearance certificate when trading products.
- Korea's authentications are classified into a compulsory authentication and a voluntary authentication, and each ministry implements a number of authentication systems under respective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However, this causes the following adverse effects:
 - A variety of authentication systems and reckless establishment of authentication institutions bring about insufficient authentications, causing confusion to consumers.
 - Standards for authentication and authentication standards of authentication institutions are not satisfi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mining the credibility of the authentication resul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Some authentication requirements of authentication institutions are not m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ecoming the major obstacle to concluding multilateral agreements.
- This study intends to deal with measures for the reform of legal systems related to establishing a standard authentication system satisfy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authentication systems under various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s.

II. Main Contents

- Requiring the simplification of types of certificates and the modification of procedures for authentication
 - Too many types of authentications do not affect consumers' choice.
 - Overlapping procedures or items for authentication bring burdens on companies.
- Demanding the credibility of domestic authentication systems
 - Domestic testing or authentication institutions have insufficient ability to carry out tests or analysis.
 - Heated competition among authentication institutions results in inadequate or false authentication.
 - Various problems take place, such as disqualification of examiners.

- Requiring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national system for managing standards and authentications
 - Independent operation of authentications by each ministry produces redundancy in procedures for or management of authentications.
 - When creating a new authentication system, consultation and comprehensive review are not made among relevant ministries.
- Requiring the management of authentication systems linked with marking systems
 - It is necessary to link authentication systems with marking systems that provide consumers with criteria for selecting products in terms of safety.
 - Post management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restitution of economic benefits that companies unjustly acquire through false or insufficient authentication marks.

III. Expected Effects

- Transferring the existing systems into a system based on the self-confirmation or self-approval of a business operator
 - It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review the scope of direct or indirect supervision on individual systems.
- Applying international standards to domestic ones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hat the standard authentication system is considered as technology barriers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Follow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s standard authentication systems are developed under globalization by product, and ultimately lea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It is required to endeavor to make domestic technology standards and standard authentication systems select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 **Key Words :** Standard authentication system, international standard, technology barrier, marking system, prerequisite authentication system of new product

목 차

| | |
|---------------------------------|----|
| 요 약 문 | 3 |
| Abstract | 7 |
| 제 1 장 서 론 | 15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5 |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 1. 연구의 범위 | 16 |
| 2. 연구의 방법 | 16 |
| 제 2 장 기준인증제도의 개념과 운용현황 | 17 |
| 제 1 절 기준인증제도의 개념요소 | 17 |
| 1. ‘표준’과 ‘기준’의 관계 | 17 |
| 2. 인증의 개념과 필요성 | 22 |
| 제 2 절 인증제도의 법적 구조 | 25 |
| 1. 기준인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 25 |
| 2. 기준인증제도의 구조적 특징 | 27 |
| 3. 기준인증제도의 개별 프로세스별 법적 성격 | 27 |
| 제 3 절 인증제도 관련 정책동향 | 28 |
| 1. 국가표준정책의 동향 | 29 |
| 2. 분야별 인증제도의 동향 | 34 |

| | | |
|-------|---|-----|
| 제 4 절 | 현행법령상 기준인증제도의 운영현황 | 35 |
| 1. | 국가표준 관련 법령 현황 | 35 |
| 2. | 인증제도 관련 개별법령 현황 | 40 |
| 제 5 절 | 현행법령상 인증제도의 문제점 | 59 |
| 1. | 인증의 종류 과다 현상 | 59 |
| 2. | 복수 인증에 따른 인증절차 중복 | 60 |
| 3. | 인증제도의 종합 관리체계 미흡 | 60 |
| 4. |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성 부족 | 61 |
| 제 6 절 | 소 결 | 61 |
| 제 3 장 | 주요 외국의 인증제도와 관련법령 | 63 |
| 제 1 절 | 세계적 동향 | 63 |
| 제 2 절 | 기준인증 관련 국제규범 | 65 |
| 1.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65 |
| 2. | IEC 적합성평가제도 | 66 |
| 3. | 지역표준화기구 활동 | 66 |
| 4. | 자유무역과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국제규범 | 69 |
| 제 3 절 | 주요 외국의 기준인증제도 비교분석 | 76 |
| 1. | 미 국 | 76 |
| 2. | 유럽연합 | 80 |
| 3. | 일 본 | 94 |
| 4. | 중 국 | 98 |
| 5. | 주요 선진국의 인증제도 비교 | 103 |

| | |
|----------------------------------|-----|
| 제 4 장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 107 |
| 제 1 절 인증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107 |
| 1. 인증제도 선진화정책의 기본방향 | 107 |
| 2. 민간주도의 표준정책기능의 강화 | 110 |
| 3. 안전관리의 선진화 추진 | 112 |
| 제 2 절 법제정비방안 | 114 |
| 1.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도입 추진 | 114 |
| 2. 절차적 법제정비방안 | 115 |
| 3. 인증제도의 통합적 운용 필요 | 116 |
| 4. 표시제도와 연계 필요 | 119 |
| 제 5 장 결 론 | 121 |
| 1.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 | 121 |
| 2. 향후 검토과제 | 121 |
| 참 고 문 헌 | 123 |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125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기준인증은 안전성 확보, 거래의 효율화 등 다양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설비가 만족시켜야 할 기준과 당해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법령에서 정하는 제도이다.

최근 국민의 안전확보 및 국내 제품의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기용품, 정보·통신제품, 소비생활용품,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소방법상 위험물, 건축물 등 각 제품이나 설비마다 글로벌화·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대응하는 기준인증제도 구축 및 운용의 선진화가 요청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안보 등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마련하여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은 상품수출시 일종의 통관보증서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내 인증제도에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으며 각 부처별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다수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제도의 분산과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부실 인증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의 인정기준이 국제적 규격에 부합되지 않아 인증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이 저하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외국과의 다자간 협정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다수의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기준인증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 규격에 적합한 기준인증제도 수립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사회 기반 구축 및 국내 제품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증제도를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인증제도는 ‘표준’과 ‘기준’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표준과 기준에 관한 법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증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표준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표준화정책과 기술규제로 대표되는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정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정리를 기초로 하여 법제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지적하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 및 현행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체계를 조사·분석하는 문헌조사방법론을 채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인증제도와 운용현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비교법적 방법론을 병행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가표준과 인증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지향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연구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 2 장 기준인증제도의 개념과 운용현황

제 1 절 기준인증제도의 개념요소

1. ‘표준’과 ‘기준’의 관계

(1) 표준의 개념

일반적으로 표준화란 이해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규격의 제정과 인증을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 복잡성, 무질서 등을 최소화, 단순화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활동을 말한다¹⁾.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성원으로 한 가정이라는 최소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작은 여러 공동체가 모여 마을을 이루고 더 나아가 도시와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나 여러 번 반복하는 표현들 또는 어떠한 방식 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간다. 이런 공동 운명체는 주체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룰(rules)의 방법에 따라 실행을 하는 것이 임의로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는 간편하고 경제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표준’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사회의 발전으로 복잡 다양해져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²⁾.

1) 김창수, 표준과 인증의 이해, 대광서림, 2001, 11면.

2) 우리나라 헌법 제127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하여 국가표준제도의 수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고 이를 구체화한 법률로 『국가표준기본법』을 비롯하여 『산업표준화법』과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5,930호, 1999.7.1)에서는 국가표준, 국제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성문표

실정법규에서는 “표준”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표준화법』에서는 “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으로 정의하면서, “산업표준화”란 광공업품의 종류·치수·품질·성분 등 및 생산방법·설계방법 등, 건축물과 그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산업표준화법』제2조).

(2) 기준의 개념

표준에 대한 어원은 Standard, Specification, Measure, Object로 표현하여 비교대조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표준은 모든 행위들을 비교하기 위한 목표나 수단을 나타낸다.

표준을 사물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나 목표 또는 다른 것들의 규범이 되는 준칙이나 규격으로 표현한다면³⁾, ‘규격’은 공업제품 등의 품질이나 치수, 모양 등에 대한 일정한 표준 또는 사물의 표준이 되는 규정이고 ‘기준’은 기초나 기본이 되는 표준을 말한다.

따라서 기준이란 각각의 규격에 공통으로 적용할 방법이나 조건, 판단의 척도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표준과 기준의 관계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국가표준”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서는 “산업표

준, 산업표준에 대한 용어가 정리되어 있고 성문표준의 대표적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서 표준을 정의하고 있다.

3) 독일표준협회(DIN: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은 표준(Norm)에 대해 합의를 토대를 두고 표준화기구에 의해 규정된 과정을 통해 결정된 기술상태라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을 통해 생산물과 생산과정 및 용역과 관련해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규정을 규제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DIN, Dokumentationswesen ; Norm, 2002

준”을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표준은 기준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기준 또한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의미하는 상호 순환적인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⁴⁾

또한 표준은 기준이기는 하되 통일성을 본질로 하여 해당 분야 또는 지역에서의 정확성, 합리성,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나 기준은 단지 존재해야 할 일정한 준칙의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본질로 하는 개념이 아니며 복수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정확성, 안전성 및 합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표준과는 달리 기준은 사고발생의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가표준은 그 성질상 국가 아닌 자가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안전보호 영역과 같은 기준은 각 개인의 자기책임 영역이 원칙이며, 국가는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닐 때 보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닌 민간분야에서의 기준 제정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4) 표준의 분류

1) 영역에 따른 분류

① 국제표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나 IEC, ITU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공통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나라들이 합의를 이루어 국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한 것을 의미한다.⁵⁾

4) 김병기,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중앙법학』 제10집제1호, 중앙법학회, 367면

5) 김창수, 앞의 책, 20면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주요 기구로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과 같은 것이 있다.

② 지역표준

특정지역으로 한정된 그룹별 국가 또는 지역별 기구단체에 의해 공통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로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SC :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아세안표준·품질자문위원회(ACCSQ : Asean Consultative Committee for Standards and Quality)와 같은 기구들이 있다.

③ 국가표준

국가표준이란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의미한다. 국가표준의 제정은 국가의 표준을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국가표준 제정기관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은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국가표준은 대부분 각 나라마다 존재하며 국가표준의 제정 업무를 정부 또는 민간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은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영국은 BS(British Standards), 독일은 DIN(Deutsche Normen), 일본은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등이 있다.

④ 단체 표준

사업자 단체인 조합, 협회 및 학회 등의 구성원 내부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의미하며 단체표준은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제정하고 이것을 사용한다.

단체표준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해당 단체의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기업들이 대부분 이익을 얻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회사표준

기업 또는 공장의 사업장 내부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의미한다. 관계자의 합의에 따라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을 말하며 이 회사표준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표준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회사마다 존재한다.

2) 구속력에 따른 분류

① 강제표준

강제표준이란 특정한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기술기준에 주로 인간의 안전이나 환경보호, 자원 및 에너지절약 등을 목적으로 규정한 표준을 말한다.

대부분 법률, 조례, 기술기준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이를테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표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제품안전인증 등이 있다.

② 임의표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표준이며 강제표준을 제외한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인증의 개념과 필요성

(1) 인증의 개념

인증(Certification)이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신고된 바로 그 사람 또는 바로 그 사물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⁶⁾.

현대 사회에서의 인증제도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제품의 품질 또는 시스템의 품질보증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규정된 기준과의 적합성 또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40여 개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시장은 약 2.2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또한 730여개 인증·시험기관이 운용되고 있으며, 인증업체 수는 약 20만여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약 1만2천여 명의 심사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인증건수는 약 210만건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ISO 9000 출현 이후 인증제도는 인증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해지고 있다. 현재의 법정인증제도의 79%가 90년대 이후 신설된 것이다. 또한 품질, 보건·환경, 안전, 에너지, 신기술, 서비스·디자인 등 전문화·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규격에서는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라는 용어⁷⁾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출범한 WTO 체제 속에 기술규정에 의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된 WTO

6) 객체를 인증하는 것은 이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을 뜻하며 사람을 인증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분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적합성평가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 등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실증하는 활동을 말하며 그 분야로 시험, 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인증, 자격인증 등이 포함한다.

TBT⁸⁾가 발효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져 있다. 각국에서는 이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결과의 통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에의 부합화와 함께 적합성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상호인정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산업계에는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 또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적합성평가의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적합성평가시스템은 흔히 국제규격 또는 기술규격서와 같은 규범문서를 규정된 요구사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규격 또는 기준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여 진다. 한 번의 인정활동⁹⁾을 통해 도출된 인증결과가 중복 없이 다른 곳에서도 통용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인증, 즉 적합성평가 활동에 대하여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 국제 규격 또는 기준에 의거 공통적으로 구축된 적합성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2) 인증제도의 필요성 및 목적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는 구매에 앞서 사양서 등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급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매자로서는 자신의 요구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생산관리 조직이 짜여져 있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지 등 염려되는 사항이 많게 마련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통상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실시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8)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9) 인정이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관이 적격한 지를 공식적으로 실증하는 제3자 증명 활동을 말하며, 인증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등의 적합 여부를 실증하는 제3자 증명 활동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공급자로서는 거래하는 구매자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구매자가 상이한 품질경영 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되면 일일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인 인증기관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국제적 통용기준이며 공통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규격에 따라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품질 보증 활동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고 시간이나 경비 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객관적인 신뢰감을 주는 등 많은 이점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인증은 원래의 약속된 것과의 일치성을 확보하여 불일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한 활동을 개인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의 역할을 통해서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인증은 국내 제작 및 수입기기(서비스)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안전, 보건 및 건강은 물론 환경, 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인증제도의 분류

일반적으로 인증제도는 그 목적에 따라 통일화, 표준화, 품질인증, 안전인증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신기술인증, 시스템인증 등으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1) 강제성과 임의성에 따른 분류

인증제도를 강제성과 임의성에 따라 분류하면 법령 등에 의하여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강제인증이라고 하며, 법령 등의 규정에 없거나 법령에 규정이 있더라도 인증 대상을 정하여 의무화하지 않

는 경우를 임의인증이라고 한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민간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목적에 따른 분류

인증을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 인증제도를 분류해 보면, 구조·치수·단위의 표준화 등 물리적 통일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시험·측정·성능이나 시험·측정방법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품질 또는 안전 인증과 같이 품질, 안전 등 필요한 레벨을 정하여 일정 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디자인과 신기술 인증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대상에 따른 분류

인증제도의 대상은 과거에는 주로 제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사업주체, 체계(System), 제조방법 또는 기술, 사용재료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제품인증에 관한 것으로는 “전, 품, GD” 마크 등이 있고, 사업주체에 대한 인증으로는 공장등급인증이 있다. System 인증으로는 ISO 9000과 ISO 1400 시리즈 인증이 대표적인 것이고 제조방법이나 신기술에 대한 인증은 NT마크, 콩나물 품질인증 등이 있으며, 복합적인 것(제품+제조사)으로는 KS, S마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 2 절 인증제도의 법적 구조

1. 기준인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기준인증제도는 개별법에 의한 제도로서 탄생, 발전하고 그 연구도 소비자법, 산업안전법, 노동안전법 등 개별법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소비자법 분야에서의 기준인증제도는 정부에 의한 안전성·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수법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이처럼 소비자법제에 의하여 정부가 안전성·품질을 확보하는 근거는 본래 행정의 임무는 첫 번째로 국민 일반의 안전을 보증한다고 하는 이른바 야경국가적 발상에 있지만 소비사회에서는 사업자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필요성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주장되었다.

첫째, 소비자는 제조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상품에 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고 또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함으로써 제조자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그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이 저해된다. 이와 같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또 “외부성”에 의한 시장의 실패문제를 들 수 있다. 신규화학물질의 규제나 토양오염에 관한 농약규제에서는 생체를 매개로 하는 리스크가 문제가 되며, 의약품이나 농약·식품첨가물등에서도 물질 상호간 복합작용이나 유전독성등 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리스크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법 분야에서의 기준인증제도는 정보의 비대칭성·경제의 외부성에 의한 시장의 실패에 대하여 소비자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산업안전법·노동안전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산업안전법 분야에서는 산업활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외부성”의 문제, 노동안전법 분야에서는 주로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를 시정할 필요에서 발생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기준인증제도는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는 수법 중에서도 강력한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또 규제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 그 유효성에 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 기준인증제도의 구조적 특징

기준인증제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의하여 실현된다.

우선 기준의 설정행위가 있다. 그리고 그 설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에 대해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인증의 신청을 한다. 신청을 받은 인증자는 대상물이 당해 기준에 적합한가는 시험 등에 의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여 판단하고 적합하다면 인증을 부여한다. 이 인증행위에 의하여 각종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 기준인증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준설정, ② 시험, ③ 기준적합인증, 이것들은 기준인증제도에 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를 누구에게 담당시킬 것인가를 축으로 생각해야 한다.

3. 기준인증제도의 개별 프로세스별 법적 성격

(1) 기준설정행위

기준인증제도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을 신청하고 시험 등을 통하여 인증자가 그것을 부여함”을 기본적인 구조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인증의 경우에 여기서의 기준이란 “행정의 판단기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행정의 판단기준이란 법령에 따른 것과 행정규칙에 따른 것이 있다. 기준인증제도에 있어서 기준이란 대부분의 경우 이른바 기술적인 기준이다.

(2) 시험

시험이란 기준적합인증을 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의 성능 등의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시험이란 행정법학에

서는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조사의 범주에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전시험이 수행하는 역할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등을 시장에 유통시키지 않기 위한 조사라는 측면에서 사후에 기준위반의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사라는 측면에서의 행정조사와 기능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시험은 기준적합인증의 요건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준인증과정에서 사전시험은 어디까지나 수험하고 있는 제품 등의 데이터를 인증행위를 위하여 수집하는 것이며 그 데이터에 비추어 보아서 기준인증행위를 행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험은 기준인증행위의 불가결한 고려요소이며, 시험결과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시험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적합인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결한 고려요소를 결여하였기 때문에 기준적합인증의 판단이 불가능하여 인증이 거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사전검사를 행정처분으로 구성할 수는 없고 사실상의 강제가 부여되는 사실행위인 행정조사로 볼 수 있다.

(3) 적합인증행위

기준적합인증은 당해 제품 등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어 있다. 반대로 말하면 기준적합인증을 받는다면 당해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사전에 어느 행위를 금지해 두고 그것을 해제하는 이른바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인증제도 관련 정책동향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자율인증과 강제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강제인증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2008년 1월 현재 14개 부처에서 57개 법령으로 8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 분야의 강제인증제도는 6개 부처, 16개 법률에서 18개 대상 분야에 대하여 타 법령의 운영과는 독립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강제인증제도는 다양한 부처에서 자신들의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 서로 간의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고 이들 인증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통일된 절차나 기준 혹은 용어가 없어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이 되고 국내·외 공신력 확보도 곤란하여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에서는 국가인증제도 전면개편을 통한 중복 해소 및 비용절감,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1. 국가표준정책의 동향

(1) 부처간 협조를 통한 국가표준의 실효성 확보

2000년에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가 2000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설치되었으나 실제 회의는 8년간 2회에 불과하고 소속 실무위원회도 2회만 개최되는 등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로 운영되어 왔다.

2008년 신정부 출범이후 이러한 유명무실한 기능을 개선하여 국가표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부처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개편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처 간의 이견으로 해결되지 못해 기업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던 20개 부처 2만 여종 기술기준의 지정,

검사 등의 일관성과 국제규범 부합성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부처 간 실효성 있는 협조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국가통합인증마크를 과감히 도입하여 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 하던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부적인 인증모듈을 마련 함으로서 인증절차의 간소화, 중복시험 업무 개선 등 부처 간의 이해 조정의 연착륙이 이루어 졌다. 향후에도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자 발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표준을 적극 도입하는 선진형 규제제도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안전, 환경, 보건 분야에서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제정된 표준을 인용함으로써 법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 주정부 및 연 방정부의 규제정책에서 표준의 활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소방 안전, 보건 안전 분야의 표준을 주정부의 규제내용과 기준에 직접 도 입하도록 하여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의 EU국가들도 안전, 보건, 환경, 소비자 보호 분 야의 강제 인증마크를 CE 마크로 통합하여 22개 품목, 22천여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도 전기제품, 통신기기, 완구류 등 19개 유형, 325개 제품을 CCC마크로 통합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 표준화 발굴정책

‘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표준화 과제’ 라는 여론조사¹⁰⁾에 따르면 국 민들은 생활공간에서 충전기(가정공간), 신호체계(이동공간), 음식점 1인 분(소비공간)등의 표준화를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통신호체계 및 도로표지판 등 이동공간에서의 표준화에 대한 수요 가 가장 많은 것(32%)으로 나타나 향후 U-city 등 IT기반의 우리 사회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기술표준원과 동아일보 공동여론조사(2008.10.)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 교통/도로와 제품/기기, 화폐/언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73%의 외국인이 한국의 생활방식이 글로벌스탠더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언어(33%), 법제도(21%), 에티켓(18%) 수준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투자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외국인과의 소통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분야에서의 지나치게 복잡한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임의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3) 글로벌 시장과 연계한 원천기술의 국제 표준화

과거 표준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생산 활동과 품질관리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후 표준의 활용은 제품개발 기획, 유통단계로까지 확대되고 표준화를 통한 사회적비용의 최소화 등 경제사회의 효율화에도 기여 하였다. 그러나 최근 단일화 추세에 있는 글로벌시장에서 표준은 무역 촉진의 도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자유무역촉진을 위해 국제표준을 무역규범화하고 있어 국제표준의 선점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MPEG, 무선 네트워크 기술 등 새로운 IT신기술을 둘러싼 국제표준선점경쟁은 각국 장관이 표준외교를 펼치는 등 그 경쟁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원천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체계적인 국가지원전략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차원의 지원 전략은 주로 국제표준 선점 경쟁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주로 이루어진다. 2006년 이후 국제표준화 기구에서의 의장·간사 진출은 외

형적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여 왔다. 그러나 관련 시장의선점 등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한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SO, IEC 등 국제표준화 기구들도 최근 들어 국제대전력망기술회의,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녹색성장기술 등의 미래시장 지배적 기술표준개발에 협력키로 합의하는 등 시장선점과 관련된 표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이후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 간 제휴형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CD, DVD 분야 등의 첨단디지털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기술은 일본이, 생산 기술은 한국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국 등이 가지고 있어 국제적인 조인트 벤처 등 M&A를 위한 도구로서 표준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4) 무역기술장벽 해소

기술장벽(TBT)·표준·인증 정보의 전달체계 기반 강화 및 공급자 중심 위주의 통계관리는 수출기업 등 관련업계 위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은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제3자 인증체제로 변경(2008.11.)을 추진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신규제정책 중 하나로 CE인증모듈 8개에서 16개로 세분화(2008.5.)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전략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IT 보안제품강제인증제도 등의 새로운 기술장벽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TBT중앙사무국이 출범하여(2008.9.), 관련부처들에 대해서 유기적 업무협조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험인증시장이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험분석역량과 전문인력 육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 시험인증시장 규모가 2005년도에 50조원에서 2009년도에 85조원으로 지속적인 신장세로 예측이 되며 2008년 현재 국내시험검사기관은 총 1,589개, 국내시장규모 3.4조원 규모이다. 해외기관이 국내시

험인증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시험분석역량이 80%수준이며, 한국의 시험분석역량은 43%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국제평가사는 각각 17명과 20명인데 비하여 한국은 1명 보유하고 있는 수준으로서 국제평가사 양성도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5) 제품안전 관리

세계 여러 국가는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은 안전관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중국산 불법·불량 어린이 용품 등 안전취약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안전관리 예산을 2014년까지 1억4천만 달러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인력을 최소 500명 이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국 제품의 잇단 사고 등으로 실추된 제품안전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주요 소비자제품에 대한 수출검사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완구, 폭죽, 라이터, 전자제품 등 4대 소비자제품에 대하여 샘플검사를 강화하고 합격한 제품에만 수출 허가를 추진 중이다. 유럽은 중국, 동남아 등 저가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원, 학교, 유관기관 등을 제품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FTA 등으로 세계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제품 위해정보의 상호공유 등을 위해 국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위해제품의 수입 전 차단을 위해 글로벌 차원의 위해제품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은 위해정보 상호공유 등을 위한 규제당국 협의체를 구성하여 차관급 제품안전회의를 정례화하고 분야별 실무검토위원회를 년 1회 개최토록 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2. 분야별 인증제도의 동향

(1)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분야 인증제도는 정부 주도로 사전 규제주의의 엄격한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활동은 미흡한 수준이다.

정보통신 기기 사용의 증가로 소비자의 제품 안전과 전자파 인체영향문제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 인증기준은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위해 정도와 관계없이 기기·품목별 인증절차가 동일한 수직적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안전기준은 유선 기기, 전자파흡수율기준은 휴대전화, 전자파적합성기준은 팩시밀리 등 일부 유선기기와 정보기기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전파연구소 중심의 인증관리로 민간 시험인증기관의 인증시장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인증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여 인증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

현재 전파연구소가 기기 인증, 시험기관 지정·관리, 시장 감시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을 대형화·다국적화하여 이들을 통해 자국 기업의 외국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한다.

(2) 산업 분야

산업 분야의 인증제도는 그 범위나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며 일부 다른 부처의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3) 국토해양 분야

국토해양분야의 인증제도는 품질과 안전 그리고 신기술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양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선박과 수산물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시설이 대상이다.

(4) 환경 분야

환경분야의 인증제도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그 범위와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지고 있다.

(6) 보건복지 분야

보건복지분야와 검역원 그리고 식약청 인증제도는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및 화장품이 대상이다.

제 4 절 현행법령상 기준인증제도의 운영현황

1. 국가표준 관련 법령 현황

(1)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은 99년 2월에 제정되어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 및 국가표준체계의 운영·관리 등으로 구성되

어 국가표준을 수행함에 있어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산업표준화법」등 국가표준과 관련된 여러 법과의 연관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산업표준화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계량제도 확립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을,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측정표준 기관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체계

| 국가표준기본법 | | | | | | |
|---------|-------------|--------------|-----------------------|---------------|---------------|---------------|
| 구 분 | 성문표준 | 계량측정 | 품질인증 | 적합성시험 | 측정표준 | 참조 표준물질 |
| 법 령 | 산업화 표준화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 국가표준 기본법 | 국가표준 기본법 | 국가표준 기본법 |
| 기 관 | 한국 표준협회 | 계량협회 | 한국 인정원 등 | 인정기구 KOLAS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

법률에서는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 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를 두어 운용토록하고 있다. 이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유지·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 조정 등을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표준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나라

의 모든 국가표준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가표준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부처 간 표준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 할 수 있는 기능도 규정하고 있다.

(2)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으로 제정되어 1993년 6월 산업표준화법으로 법명이 개정된 이래로 총 30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4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한국산업표준, 한국산업표준의 적합성 인증, 산업표준화의 촉진, 한국표준협회 및 보칙 등으로 구성되어 기술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의 주요 기능은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및 확인 등에 관한 사항과 KS인증으로 대변되는 품질인증 및 서비스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항을 기술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KS인증의 합리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운용요강을 두고 있다.

(3) 기준인증제도의 내용

1) 「국가표준기본법」상 기준인증제도

우리나라에는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노동부 등 10개 부처에서 39개 법정강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제

품인증제도는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다양한 인증제도를 하나의 제품인증마크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2년간(2006.8.~2008.8.) 각 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하고 인증절차를 단순·유형화한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기로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결하였다.

①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규정을 신설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Mark)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관계부처에서 2010.12.31일까지 국가통합인증 마크를 도입하지 아닐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두고 법령을 제·개정하여 제품인증을 거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② 표준인증심사제 도입규정을 신설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 등을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개 인증 심사유형은 국제기준(ISO/IEC Guide 67)을 바탕으로 9개의 심사모듈로 심사유형을 간소화 하였다.

③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등을 변경

국가표준심의회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의장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을 관련 부처의 장관급에서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였다.

④ 제품인증제도 운영·인증마크 사용시 지경부장관과 협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제품에 인증 등을 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지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한다.

2) 『산업표준화법』상 기준인증제도

1961년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된 이래로 한국산업표준(KS) 및 KS인증은 표준화를 통한 생산효율과 품질향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변화된 산업환경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표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2년 전 부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제도보완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으로 추진하여 조문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장·절로 체계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다.

① 표준개발 협력기관제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한국산업표준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KS의 시장적합성을 높게 한다. 앞으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시장수요에 신속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민간기관이 산업표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② KS 인증기관 지정 관련 재량행위 투명화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침”에 따라 KS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세부사항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신청요건(조직, 사무소 등)등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지정’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③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제도 도입

현재 제품에 대해서만 KS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도 KS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④ 인증심사원 규정 신설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부여·취소·정지 관련 조항을 법에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인증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⑤ 단체표준 관련 조항 정비

현행 인증위주의 단체표준 조항을 단체표준 제정위주로 변경하고 단체표준 인증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단체표준의 인증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표준인증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을 폐지하였다.

2. 인증제도 관련 개별법령 현황

(1) 현행 인증제도 현황

인증제이란 제품, 공정,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이 표준이나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 또는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평가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국내 인증제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인증제도와 법적근거가 없는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현재 법정인증은 지식경제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64개 법령에 따라 98종류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 인증은 시험기관, 업종별 단체 및 지자체 등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60여 종류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의 분류

| 구 분 | | 내 용 |
|----------|----------|--|
| 법정 인증 | 강제 인증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한 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9개 기관 39개 인증) * 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능 |
| | 임의 인증 |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에 따라 권장하는 인증(환경마크 등 18개 기관 59개 인증) *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
| 민간인증 | | 법적근거 없이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민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Q마크 등 60여개 인증) |

연도별 인증제도 수는 60년대에 4개, 70년대에 13개, 80년대에 21개에 불과 하였으나, 90년대에 83개, 현재 158개 등으로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이 도입된 90년대부터 전체의 87%인 137개가 신규로 도입되었다.

국내 인증시장 규모는 매년 9.5%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2007년 3.7조원에서 2012년에는 5.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730여개의 인증·시험기관에 12천여명의 심사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20만여개의 업체가 210만 여개의 인증을 받고 있다.

법정강제인증의 경우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품질, 환경,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법정임의인증은 품질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 환경, 보건, 신기술, 에너지, 소프트웨어, 디자인, 서비스, 단체인증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민간인증은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정 분야에 국한 되지 않고 인증을 하고 있다.

분야별 인증제도의 수(2008.2.현재)

| | 안 전 | 품 질 | 환 경 | 보 건 | 신기술 | 에너지 | S/W | 기 타 | 합 계 |
|-----|-----|-----|-----|-----|-----|-----|-----|-----|-----|
| 강 제 | 23 | 5 | 7 | 4 | - | - | - | - | 39 |
| 임 의 | 5 | 27 | 7 | 2 | 6 | 3 | 6 | 3 | 59 |

(2) 강제인증제도

1) 개 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강제인증제도와 임의 인증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강제 인증제도는 국가가 국민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와 안전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상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보건상의 최소요건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이 당해기준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 유통, 사용상의 제한이 있다.

각 부처에서 형식승인, 안전검사, 성능검사, 적합검사 등의 운영방식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강제인증제도 관련법령 현황

| 관련 법령 | | 대상분야 | 대상품목(개수) |
|------------------------------------|---------------------|-------------------|----------------|
| 유사 제도가 고시 등의 형태로 존재 | 관련 절차 등 운용 |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선/전원코드 등(217) |
| | |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 | 승강기안전부품 |
| | | 3. 먹는물관리법 | 정수기 |
| | | | 완충기 등(5) |
| | | | 정수기(1) |

제 4 절 현행법령상 기준인증제도의 운영현황

| 관련 법령 | | 대상분야 | 대상품목(개수) |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용기 | 안전밸브 등(11) |
| | 5. 항공법 | 항공기, 장비품 | 항공기 등(18) |
| 관련 절차 등 내용 불명확 | 6.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 기름여과장치 등(26) |
| | 7.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 | 원동기동력계 등(27) |
| | 8. 산업안전보건법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모 등(72) |
| | 9. 주택법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주택성능등급 | 바닥구조, 공동주택(2) |
| | 10. 건축법 | 차음구조, 내화구조 | 스터드 벽체 등(21) |
| | 11. 선박안전법 | 소형선박, 선박용물건 | 구명정 등(147) |
| | 12.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치(1) |
| | 13.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 불도우저 등(27) |
| | 1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소방용품 | 소화기 등(32) |
| | 15. 약사법 | 의약품 | 의약품 등(2) |

제 2 장 기준인증제도의 개념과 운용현황

| | | 관련 법령 | 대상분야 | 대상품목(개수) |
|----------------------------|------------------------------------|-----------------------|------------|-------------|
| 인증 기준 예비 제도 부재 | | 16. 화장품법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등(2) |
| | | 17.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 마취기 등(128) |
| | | 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 가스용품 | 가스렌지 등(13) |
| | 예비 제도 내용 부재 | 19.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 | 공산품 | 가스라이터 등(65) |
| | | 2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 압력용기 등(6) |
| | | 2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항공기부품 | 동력장치 등(12) |
| | |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 | RDF 등(4) |
| | | 23. 계량에관한법률 | 계량기 | 수도미터 등(18) |
| | | 24. 전파법 | 무선설비기기 | 휴대폰 등(217) |
| | | 25.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기자재 | 전화기 등(69) |
| | 인증 기준 성격상 예비 제도 불필요 | 26.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배출가스 | 자동차(1) |
| | | 27. 소음진동규제법 | 자동차주행소음 | |
| | | 28. 식품위생법 | 식품 HACCP | 빙과류 등(7) |
| 29. 축산물가공처리법 | | 축산물 HACCP | 도축장(1) | |
| | | | | |

제 4 절 현행법령상 기준인증제도의 운영현황

| 관련 법령 | 대상분야 | 대상품목(개수) |
|--------|------------------|----------|
| 29개 법령 | 36개 분야 1,288개 품목 | |

2)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품 출고전(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또는 통관전(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강제인증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이 관리하고 인증기관으로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지정되어 있다.

3)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①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서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 통신기자재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② 무선설비기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국내에서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무선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지시켜 인명의 안전 및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수용 무선기기(21종)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등록신청, 서류심사, 기기시험 및 등록업무대행을 하고 전파연구소에서 무선기기형식등록 증명서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③ 전자파적합등록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이들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의한 통신 장애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유발을 예방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위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국내 전파 환경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파법 제57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이다.

4) 공산품 안전검사제도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써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 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제조, 수입, 유통시킬 수 있는 강제인증제도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을 판매, 판매를 위한 수입, 보관 또는 운반이나 영업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앞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안전검사 의무자,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판매업자 및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5) 압력용기, 가스제품 안전관련

① 고압가스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안전검사

고압가스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함)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용기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사용자, 임차인 등)가 용기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용기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외국용기 등 제조자 포함)는 당해 용기 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기등을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용기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가스제품 안전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가스용품(용기용 밸브 포함) 등을 신규로 제조하거나, 허가권(특별시, 광역시, 도) 외의 지역으로 사업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서 정밀검사, 제품검사 및 공정심사로 구성되는 강제인증제도의 일종이다.

6) 기계·기구·설비에 관한 인증제도

① 자동차 형식승인

자동차는 대통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는 제도로,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여야 한다.

인증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 시험, 검사시설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자기인증)할 수 있으며,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 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인증제도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기가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또한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인증제도

자동차를 제작, 수입하고자 하는 자(자동차제작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제작차에 대하여 당해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④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인증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차량 구입시 에너지절약형임을 손쉽게 판단하도록 하고, 자동차 제작사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형이하 승합차 및 소형이하 화물차는 '99년 3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⑤ 건설기계 형식승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신규 국내제작 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건설기계가 시공에 필요한 적절한 규격을 갖추었는지와 도로상 주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건설기계 사용자 및 국내 시공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을 획득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형식승인된 각종 규격이 실제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측 검사하고 적절하면 결과를 각 시·도 및 관련기관에 통지하여 건설기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제작 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인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 품질인증

항공기등은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항공기의 안전항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 상업용 항공기 등의 개발, 생산 및 운용 단계에 있어 감항성(airworthiness)¹¹⁾에 대한 적합 여부를 입증하도록하는 제도로써 『항공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품질인증 체계는 항공기의 운항, 운송사업 부문은 국토해양부, 생산사업 부문은 지식경제부가 각각 구분하여 관할하는 이원화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항공기의 형식 및 생산 증명 발행을 위한 적합성 평가, 시험, 분석, 검사 및 산업체 품질보증 체계 승인 등과 같은 기술적 업무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⑦ 위험기계·기구의 성능검사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근로자의 작업상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11) 이 때 감항성이란 일반적으로 항공기 및 그 관련 부품이 비행 조건하에서 정상적인 성능과 안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만약, 항공기 또는 관련 부품의 설계 사양이 이러한 감항성에 대한 특정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항공기 생산 혹은 운용중 설계에서 요구되는 감항 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중대한 항공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감항성(堪航性), 일본은 내공성(耐空性), 중국은 적합성(適航性) 미국 등은 Airworthiness라 한다.

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위험기계, 기구, 보호구등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등을 검사하여 제작형식을 승인함으로써 이후 생산 또는 수입될 동일규격 및 동일형식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⑧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할 경우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은 소방방재청장의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소방방재청장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또는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⑨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서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률이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승강기검사기관으로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⑩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 대여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정(안전도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식품·약품·의료 관련 인증제도

① 의약품 및 의료용구 안전검사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기구와 용기, 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이 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화장품 안전성 검사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 고시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전에 그 원료의 성분대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는 제품의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수기 품질검사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정수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대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한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8) 환경·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환경오염물질, 소음, 진동 등을 측정, 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 출고된 환경측정기기 중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 측정기기에 대한 최초의 정도검사는 동 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받을 수 있다.

② 선박제조검사, 선박검사, 형식승인 및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i) 선박제조검사

선박을 제조하는 자는 여객선,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재질로 제조되는 선박에 대하여 특정 시설에 대하여 선박의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의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ii) 선박검사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시설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iii) 형식승인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을 수 있다.

iv)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기름, 유해액체, 폐기물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박과 화물창에 대하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최저효율기준, 목표소비효율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이다. 1등급제품은 5등급보다 30~40% 에너지가 절감된다.

최저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확산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개발의 촉진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써 개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목표소비효율은 일정기간후에 달성해야할 에너지소비효율 목표치를 말한다.

(3) 임의 인증제도

임의 인증제도는 사업장에서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혀 구속적인 제도가 아니다. 다만 임의 인증제품이나 기술의 경우 제품과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해 줌으로써 널리 유통 사용되도록 권장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기본목표가 있다.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와 환경,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임의 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임의 인증제도중에서도 국내 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정부 유관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각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신기술), NT(New Technology, 한국신기술), 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우수신기술), IT(Excellen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CT(Designation of new technology related to construction, 건설신기술), ET(Environmental Technology, 환경신기술) 신기술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임의인증제도

| 분 류 | 인증/검정/검사제도 |
|-------------------------------------|---|
| 신기술 (※2006년 이후 NET, NEP로 통폐합) | 신기술인증(KT마크) 제도, 신기술인증(NT)/우수품질인증(EM)제도 정보통신 우수신기술(IT 마크)지정 지원제도 건설신기술(CT) 지정제도 환경신기술(ET)-환경기술평가 |
| 제품 안전 | 공산품 안전 검정, 안전인증(S마크)제도, 제품안전성(S마크), HS마크 |
| 제품 품질 | 공산품 품질표시제도, 품질보증마크(Q마크), 중소기업 우수제품(GQ)마크 인증, K마크, 신뢰성인증, 보존용품 품질인증 |
| 환경제품/설비, 재활용제품 | 환경표시제도, 환경성적 표지제도, 환경설비 품질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
| 에너지 효율 |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절전형 사무가전기기 보급제도(에너지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

| 분류 | 인증/검정/검사제도 |
|----------|--|
| 소프트웨어 | S/W 품질인증,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산업용 S/W |
| 서비스, 디자인 |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공산품 사후봉사 우수기업 인증제도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선정(GD) |

- 중소기업진흥공단(2003.6.)

(4) 신기술 인정제도

신기술 인정(KT)제도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창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3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기술 인증(NT)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신기술 또는 제품에 신기술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우수품질인증(EM)은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 성능 및 제조공정을 시험·분석·평가하여 동종제품 대비 탁월하게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셋째, 정보통신 우수신기술(IT)은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를 못하는 정보통신분야의 개인 또는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에 의한 신제품개발 및 산업화 촉진하고 기술력 있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넷째로, 건설신기술(CT)은 국내에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건설기술로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이 있고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보호하는 제도이다.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업체의 건설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신기술(ET)은 국가가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기술을 지정하여 줌으로써, 기술사용자는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게 하여,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환경산업을 육성시켜 환경 현안문제를 조기 해결하고 환경기술의 전략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들 신기술 인증제도에 의한 후속지원 혜택으로서는 인증기술에 대해 정책자금 융자, 기술신용보증 자금 지원 평가시 우대, 신기술의 최초기업화 세제지원, 창업보육시설활용, 기술·경영지도, 시제품개발비지원 및 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이를 세분화시켜 살펴보면 각 부처별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국가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조달 우수제품 선정, 정책자금 융자우대, 기술신용보증 우대, 신기술마크사용 등이 있다.

신기술에 대한 지원제도는 부처별 인증제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매 촉진제도 등을 운영중에 있다. 즉, NT의 경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유명 전시회 참여 지원, 하자 보증 및 신뢰성 보증 보험 등의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KT의 경우 신기술의 기업화 세제 지원 제도를, IT의 경우, 시제품 개발비 지원은 창업보육시설 및 기술경영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CT 및 ET의 경우 대부분이 유사하지만 공공시설 성공불제의 경우 ET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나 CT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인증제도별 근거법, 실적, 인증구분, 인증대상 비교분석

| 제도명 | 신기술(KT) | 신기술(NT), 우수품질 (EM,EEC) | 우수신기술 (IT) | 건설신기술 (CT) | 환경신기술 (ET) |
|------|----------------|------------------------------|---------------|---------------|----------------|
| 부 처 | 교육과학 기술부 |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 국토해양부 | 환경부 |
| 실무기관 | 한국산업 기술진흥협회 | 기술표준원 |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 건설교통 기술평가원 | 환경관리공단 |
| 근거법 | 기술개발 촉진법 | 산업발전법 | 정보화촉진 기본법 | 건설기술 관리법 | 환경기술개 발및지원법 |
| 인증구분 | 기 술 | (생산)기술· 제품 | 기 술 | (시공)기술 | (공정)기술 |
| | 인 정 | 인 증 | 지 정 | 지 정 | 지 정 |

제 5 절 현행법령상 인증제도의 문제점

1. 인증의 종류 과다 현상

국내 인증제도는 158개로 너무 많아 소비자는 KS, Q, 검,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인증마크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인증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증마크를 확인하지 않거나 단순히 인증마크가 많이 표시된 제품을 선호하는 등 인증마크가 우수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판매를 위해 법정강제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강제는 아니지만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정임의인증과 공공기관 입찰 등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민간인증을 가능한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실정으로, 일부업체는 10개 이상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인증이 기업의 경쟁력향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복수 인증에 따른 인증절차 중복

동일제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제도 사이에 시험항목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업은 비용, 시간, 인력 등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소관 법정강제인증제도에서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은 27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시험방법이 같은 중복항목이 있는 제품은 5개 정도로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러나 KS를 포함한 법정임의인증제도 사이에는 복수인증대상 50여 개 제품에서 170여개 시험항목이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정강제 인증, 법정임의인증 및 민간인증 사이에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고려할 경우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중복항목을 해소할 경우 기업이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인증제도의 종합 관리체계 미흡

KS 등 국가표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술기준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국내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국제공인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WTO 및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기술기준은 지경부, 국토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신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관사이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유사·중복인증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산물의 인증이나 교통시스템 등의 기술기준을 서로 다르게 운용하고 있어 인증이 남발되고 지역사이의 호환을 어렵게 하여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4.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성 부족

국내 인증시장은 시장규모에 비해 시험·인증기관이 많은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성이 낮아 시험·인증기관이 우수한 인력 및 고가의 장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어 부실한 인증을 하는 요인이 되는 등 선진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SO 9000, 14000 등의 시스템인증을 도입한 이후 에너지, 신기술 등 신산업분야로 인증을 확산시키고 있어 세계적으로 인증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시험·인증기관은 시험·인증에 대한 적합성평가시스템이 국제수준에 미달되어 ISO, IEC 등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방법 중에서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규격 수는 전체의 65% 정도에 불과하며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시험을 해외 인증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은 인증을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무역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민간인증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인증이 많고 민간인증은 매우 취약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6 절 소 결

우선 개별 법령별 인증으로 인하여 인증시간과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사한 신규인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예를 들면 건축용보온재의 경우 KS, 환경마크 등 5개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 8개항목이 중복시험이다.

둘째, 인증마크가 다양하며 소비자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증마크가 없고 안전·보건 등 법정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식별도 어렵다. 이에 대해 유럽의 CE마크, 중국의 CCC마크, 일본의 PS마크 등 주요 선진국의 강제인증마크의 통합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내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 부족과 인증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실·허위인증, 심사원 자격미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이 해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넷째, 국가표준·인증 관리 종합시스템이 부재하다. 부처별 독자운영으로 인증의 중복·상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증제도 신설시 부처 간의 협의나 종합적인 검토도 미흡하거나 부재하다.

2006년 1월 산업기술시험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였으며 인증간 시험·검사가 중복된다는 의견이 70%, 인증의 중복으로 인한 사후관리, 인증유지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64%로 인증제도의 전반에 대한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시 인증여부 및 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적기에 시장 출시가 곤란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정이 없어 신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 곤란하거나 규정이 있는 경우도 법령이 아닌 고시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법규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접근성이 제약된다. 일부 규정은 처리절차 및 방법의 제시가 불명확하여 인증 담당자가 신제품에 대한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제 3 장 주요 외국의 인증제도와 관련법령

제 1 절 세계적 동향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경제를 지배한다”는 표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WTO/TBT 협정에서 회원국이 신규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제표준화무대에서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하여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움직임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2012년 세계 7대 표준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표준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2008년도에는 적잖은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국제표준화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지표의 하나인 국제표준제안건 수가 2008년 말 누계기준으로 212건으로 2007년도에 비하여 61건이 증가하였다. 국제표준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의 의장·간사·컨비너 수도 '07년 63명에서 2008년에는 8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ISO에 가입한 이래 45년 만에 기술위원회의 신설·폐지를 승인하고 기술위원회간 업무를 조정하는 기술관리이사회(TMB)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IEC 이사회(CB), 전략관리이사회(SMB)에도 진출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총 900여개에 달하는 각종 기술위원회 중 733개 기술위원회에 가입하여, 가입율 80%를 넘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2008년에는 우리나라 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52회(4,313명 참가)에 걸쳐 국제표준화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였

으며,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기술위원회에 우리나라 표준전문가가 276회(1,561명) 참가하기도 하였다.

한편,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역내 표준화기구인 PASC (태평양 지역표준회의), APEC SCS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표준적합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역내 국가들의 기술표준 동향을 파악하고, 에너지효율, 기업의 표준화참여 촉진방안 등 주요 국제표준화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등 지역표준화기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08년 말 현재, 세계 25개국 32개 기관과 표준·법정계량·적합성평가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저변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2년 이래 아세안 등 주요 전략적 협력국가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 인력 98명(2008년 15명)을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 표준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표준관련 국제기구 가입현황(2008.12.)

| 국제기구별 | | 설립목적 | 설립연도 | 회원국 | 보유규격 |
|--------------------|------------------|---|---------|-----|--------|
| | | | 가입연도 | | |
| ISO (국제표준화기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과학, 기술, 경제 등 일반분야국제규격의제정·보급 •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 | 1947. 2 | 157 | 17,765 |
| | | | 1963. 6 | | |
|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분야 국제규격의 제정및 보급 | 1906. 6 | 75 | 6,027 |
| | | | 1963. 5 | | |
| I E C Q | CMC (검증관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C 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 (IECQ)의 운영 및 관리 | 1976. 5 | 16 | |
| | | | 1979. 1 | | |
| | ICC (검사조정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검사기관의 인증 • 품질인증과 검증에 관한 시행 • 규제의 균등한 적용 | 1978. 1 | | |
| | | | 1984. 1 | | |

| 국제기구별 | 설립목적 | 설립연도 | 회원국 | 보유규격 |
|------------------------------------|---|---------|-----|------|
| | | 가입연도 | | |
| IECEE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 • 전기전자 제품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국제무역 촉진 | 1985. 9 | 47 | |
| | | 1987.12 | | |
| IECEX Scheme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제도) | • 폭발위험 상황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의 적합한 안전수준 유지 및 상호인정 등 | 1997.10 | 26 | |
| | | 1997.12 | | |
| PASC (태평양지역표준 회의) | •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서의 유럽지역의 지배적 위치에 대처 • 태평양국가들의 상호이익 증진 | 1973. 2 | 24 | |
| | | 1973. 2 | | |

제 2 절 기준인증 관련 국제규범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전기·전자 이외의 기술, 물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분야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및 적합성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분야에서 협력증진을 통하여 세계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설립되었다. ISO의 회원은 각국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기구인 National Standards Body (국가표준화기구)가 되며, 1개국 1대표 기구를 회원으로 한다.

ISO는 스위스 민법 제60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지만, ISO가 공공과 민간에서 특별한 위치를 갖는 것은 대부분의 회원이 정부기구이며, 민간회원일지라도 국가법에 의하거나 정부기관의 산하 또는 제휴업체단체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2. IEC 적합성평가제도

전기 분야의 공적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는 회원국간 통일된 규격과 간소한 절차에 의한 인증을 통해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자 적합성평가 이사회(CAB) 소속으로 ① 전자부품 품질인증 제도(IECQ ; IEC Quality Assessment System for Electronic Components) ②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 ; IEC System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③ 방폭 전기기기 국제인증제도(IECEX ; IEC Scheme for Certification to Standards Relating to Equipment for use in Explosive Atmospheres) 등 3개 인증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3. 지역표준화기구 활동

(1) PASC(태평양지역표준회의) 활동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의 블록화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표준분야에서의 지역협력의 필요성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유럽 국가들의 EU 단일경제체제 구축과 관련한 지역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표준화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태평양연안 국가들은 ISO 및 IEC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역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태평양지역 국가의 표준화기구 대표들은 1972년 5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모임을 갖고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표준화 기구를 창설하기로 결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이 기구의 정식명칭을 “태평양지역 표준회의”라 결정하고 1차 회의를 미국 호놀룰루에서 '73년 2월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에서는 산업계의 표준화활동참여 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연수 및 표창을 통한 인력개발, 관리자급의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인력투자 강화 등을 언급했다. 한국에서는 기술표준원의 최근 변화를 발표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기술표준원 조직변화 소개, 개도국 교육소개 및 MOU 체결현황, IT기반표준화 활동을 소개했다. 호주에서는 표준화활동 관련 효율성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표준화활동에 정부 및 산업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캐나다에서는 표준의 경제적 가치를 발표하면서 표준수의 10% 증가는 노동생산성 및 경제적 가치를 3.56%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17%, GDP 증가율의 9%는 표준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2) APEC SCSC

SCSC(Sub 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 표준적합소위원회)는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산하에 설치된 분과위원회중 하나이다. APEC은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아태지역 12개국의 참여하에 결성된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로서 2007년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에 이르고 있다. APEC은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 “Declaration on an APEC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을 채택하고 무역자유화 그룹을 「무역투자위원회(CTI :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다음해인 1994년 1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는 “Declaration on an APEC Standards and Conformance

Framework”을 채택하고 CTI의 부속위원회로서 SCSC 설립을 승인하였다. 역시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였고, 1995년 11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7차 각료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의 행동계획으로서 “APEC 무역투자자유화행동지침

(Osaka Action Agenda)”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무역 촉진 TFTF(무역 촉진 태스크포스) 공동의장인 한국과 미국은 회의결과인 REACH 관련 업계별 대응현황(비누 및 세제, 전자기기, 위생용품) 및 RoHS 관련 각국별 대응현황(태국, 중국, 호주)을 발표하였다. 또한, APEC 웹사이트에 EU 환경규제 관련자료 등록, IEC/TC111 공동대응, 제7차 표준 및 적합성 컨퍼런스 시 EU 환경규제 관련 패널토의 등을 제안하였다.

(3)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제표준화활동 참여

2010년도까지 IECEE CB Scheme에서 사용되는 IEC 표준규격 (168종)을 부합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IEC/TC111(전기전자 제품 및 시스템관련 환경표준) 및 ISO/TC223 (재난관리) 회의 개최 전 PASC 회원국 간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협력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1) 식품 안전

중국과 호주는 식품안전협력포럼과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및 위해분석 세미나개최 결과를 발표하였고, 미국은 ‘APEC 식품안전을 위한 협력 및 연수’를 제안하였다.

2) 전기전자용품분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JAC 의장은 2008.5.14 브루나이에서 개최한 JAC 회의 결과 및 차기 회의(2008.11.6~7, 인도네시아 발리) 개최 계획을 발표하였고, 페루는 APEC EEMRA Part I 가입 의사를 표명하였다.

3) 표준 교육

표준교육은 TILF 프로젝트 수행 등 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1단계(사례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결과 및 2단계(교재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4) 산업계와의 협력

베트남의 주도로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PASC는 ABAC과의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국제표준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건, 보안, 식품 등 국제표준화 부합화 우선분야를 제시하였다.

4. 자유무역과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국제규범

(1) 개 요

제품의 품질등에 관한 기준 및 특정제품이 그 기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인증제도는 각 국에서 품질의 확보, 안전성의 확보, 환경보전등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 운용되고 있으며, 본래 무역장벽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입제한이나 수입품의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인증제도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또 외국 제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받는 것이 국내 제품에 비해서 곤란한 경우 기준인증제도가 사실상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전기표준회의(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FAO/WHO합동식품규격위원회(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기준 및 적합성평가방법의 통일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 GATT에서도 기준인증제도에 관해서 국제적인 조화의 추진, 당해 조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 1979년에 “무역의 기술적 장

에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하 “TBT 협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으며, 나아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스탠다드 코드 의무의 명확화를 주제로 하는 이른바 TBT협정이 합의된 바 있다.

한편, 위생식품검역조치에 관한 규율에서도 기준인증제도와 같은 관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교섭의 일환으로 체결된 “위생식품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하 “SPS협정”이라 한다)가 존재한다.

(2) TBT협정

본 협정은 ① 제품의 특성 또는 관련 생산공정·생산방법(PPM :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에 관한 준수가 법률등에 의하여 국내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기준(강제규격 : Technical regulations), ② 제품 또는 관련 생산공정·생산방법에 관한 준수가 강제되어 있지 않는 기준(임의규격 : Standards), ③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의 인정절차)가 무역상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표준화기관이 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내국민대우 동시에 최혜국대우로 외국제품에 적용하고 기준 등을 책정할 때에는 국제규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준 등의 제정 및 개정시에 WTO사무국에 통보를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본 협정은 각 가맹국이 자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비정부단체 각각의 표준화기관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하여 2단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즉, 각각의 표준화기관에 앞의 규정을 준수시킬 것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1차 의무)와 준수시킬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한 경우(2차 의무)이다.

| 의무의 주체 \ 가맹국의 의무 | 준수를 확보할 의무 (1차 의무) | 준수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 (2차 의무) |
|--------------------|----------------------|---------------------------------|
| 중앙정부기관 | 강제규격, 임의규격, 적합성평가절차 | |
| 중앙직할의 지방정부기관 | 강제규격 및 적합성평가절차(통보의무) | 임의규격 강제규격 및 적합성평가절차(통보의무 이외) |
| 그밖에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 | 강제규격, 임의규격, 적합성평가절차 |

(3) SPS협정

SPS협정은 위생식물검역조치가 위장된 무역제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기준에 기초하여 각국의 위생식물검역조치가 조화를 이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 ①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과학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위생식물검역조치를 적용한다(제2조제2항)
- ② 똑같은 조건 아래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다.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제한이 되는 형태로 위생식물검역조치를 적용해서는 아니된다(제2조제3항)
- ③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위생식물검역장치를 채택한다(제3조제1항).
- ④ 과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보다도 높은 보호수준을 발생시키는 위생식물검역장치를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다(제3조제3항).

- ⑤ 위생식품검역장치는 관련 국제기관이 작성한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행한 위험성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5조제1항).
- ⑥ 위험성의 평가는 과학적 증거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5조제2항).
- ⑦ 위생식품검역장치의 보호수준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의 설정에 의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제5조제5항).
- ⑧ 위생식품검역상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비례원칙, 제5조제6항)
- ⑨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 및 타국이 적용하고 있는 조치로부터 얻은 정보등에 기초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채용할 수 있다(예방원칙, 제5조제7항).
- ⑩ 앞의 조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보의무를 규정한다(제7조).

(4) 자유무역과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국제적 분쟁사례

1) EU-정어리캔에 관한 라벨규제(TBT협정-DS23)

EU는 1989년 6월 정어리캔에 관하여 EU역내에서는 *Sardina pilchardus*로부터 제조된 것에 한하여 “Sardine”라는 표시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No. 2136/89)을 정했다. 본 규칙에 따라 *Sardina pilchardus* 이외의 정어리에 예를 들면, “○○산 정어리”와 같은 표시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 FAO/WHO합동식품규격위원회에서 채택된 정어리 제품에 관한 규격(이하 “Codex규격”이라 한다)에서는 정어리캔은 *Sardina pilchardus*와 페루산 정어리(*Sardinops sagax*)를 포함한 21종류의 생선 혹은 냉동어류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제품의

라벨요건에 관해서는 단지 “Sardine”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Sardina pilchardus*만이며 페루산 정어리를 포함한 그밖의 20종류의 정어리에 대해서는 국가명이나 지역, 종명 등을 표기한 “○○정어리”로 표시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페루는 2001년 3월 자국의 생산물에 대하여 “정어리”를 포함한 표시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본 규칙은 관련하는 국제규격을 강제규격의 기초로서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TBT협정 제2.4조에 위반했다고 해서 GATT 제22조에 기초한 협의를 요청, 같은 해 7월에 패널이 설치되었다.

본건의 주된 쟁점은 ① 본 규칙이 TBT협정상의 “강제규격”에 해당하는가, ② Codex규격이 TBT협정 제2조제4항에서 말하는 “관련하는 국제규격”에 해당하는가, ③ 관련하는 국제규격을 본 규칙의 기초로서 이용하는 것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효과적이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는 경우(TBT협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가 였다.

패널은 2002년 5월에 보고서를 배부해서 ① 본 규칙은 TBT협정상의 “강제규격”에 해당하며, ② 본 규칙과 Codex규격이 모두 캔정어리라고 하는 같은 상품을 다루고 본 규칙이 Codex규격에 대응하는 라벨요건을 정하고 있는 점 등로부터 Codex규격은 TBT협정상의 “관련하는 국제규격”에 해당하지만 Codex규격은 본 규칙의 기초로서 이용되지 않는 점, ③ 제소국측은 관련하는 국제규격이 존재하고 당해 국제규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규격의 기초로서 이용되지 않는 점을 제시하면 충분하며, “관련하는 국제규격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효과적이 아니거나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것인가의 여부의 입증책임은 조치국측에 있다고 하면서 본 건에서 Codex규격이 본 규칙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효과적이 아니거나 적당하지 않는 것은 EU에게 입증되지 않고 본 규칙은 TBT협정 제2조제4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했다.

EU는 패널의 판단에 불복해서 2002년 6월에 상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상급위원회는 같은 년 9월에 보고서를 배부해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서 Codex규격이 효과적이며 적절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제소국인 페루가 진다고 했지만 그밖에 다른 점에 대해서 패널의 판단을 지지하고 본 규칙은 TBT협정제2조제4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10월 동 보고서가 채택되어 분쟁해결기관(DSB)는 EU에 대하여 본 규칙을 TBT협정에 정합적인 것으로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그 후 2003년 7월에 화해가 성립했다.

2) EU-비육호르몬쇠고기의 수입금지(SPS협정-DS26)

1985년 12월 EU는 소비자의 불안 등을 이유로 호르몬을 사용한 식육의 수입을 1988년 1월부터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 미국은 관계된 EU의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스탠다드 코드제7조제2항 위반이라고 해서 GATT 제23조 협의를 요청했지만 EU는 당초 예정부터 1년 늦은 1989년 1월부터 비육호르몬제를 사용한 식육의 수입을 전면금지했다. 그래서 미국은 같은 해 1월부터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제재조치(쇠고기, 토마토조제품, 커피, 알코올음료 등에 대한 100%의 관세 인상을 발동했다.

1995년 6월 미국은 EU의 수입금지조치에는 과학적 근거 없이 GARR 및 SPS협정 위반으로 1995년 말까지 본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WTO의 분쟁처리절차에 제소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이것에 대하여 EU는 과학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비육호르몬에 관한 과학회의”를 개최, 1996년 1월의 보고서는 “천연 및 합성 호르몬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에 위험을 미친다고 하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맺었지만 EU농업이사회는 수입금지조치의 계속을 결정했다.

그래서 미국은 EU의 조치는 GATT 제3조 및 제11조, 그리고 SPS협정 제2조, 제3조 및 제5조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1996년 1월에 GATT 제22조에 근거한 협의를 요청, 같은 해 5월에는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대 EU제제조치를 해제했다.

패널은 1997년 8월에 보고서를 배부해서 비육호르몬쇠고기의 수입금지는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고 위험성의 평가에도 근거가 없으며, 또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한 것으로 SPS협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했다.

EU는 패널의 판단에 불복해서 1997년 9월에 상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상급위원회는 1998년 1월에 보고서를 배부해서 EU의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EU의 조치가 충분한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패널의 판단을 지지하여 SPS협정제5조제1항에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패널이 국제적인 기준보다도 높은 수준의 검역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의 입증책임은 조치국(EU)에 있다고 한데 대해서 상급위원회는 제소국(미국)에 있다는 판단을 했다.

1998년 2월에 상급위원회의 보고서가 채택되어 DSB는 EU에 상급위원회보고에 입각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서 EU는 1999년 5월까지 당해 권고에 따라서 관계조치를 WTO에 정합적으로 취했다. 그렇지만 실시기한이 되었지만 EU는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해 5월 14일 미국 및 캐나다는 WTO에 대해서 EU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2억 200만달러 및 7,000만달러에 상당하는 양허의 일시정지의 승인을 요구했다. 같은 해 7월 12일 WTO는 EU의 쇠고기수입금지조치에 따른 미국 및 캐나다의 경제피해액이 1억 1,700만달러 및 1,130만달러에 상당한다는 중재결과를 공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DSB에 의하여 허가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WTO절차에 따라서 같은 해 7월 29일 이래, 캐나다는 같은 해 8월 1일 이해의 관세율 인상을 실시했다.

EU는 2003년 10월 종래의 호르몬쇠고기의 수입금지조치를 개정해서 과학적인 리스크평가절차를 도입한 것을 이유로 DSB에 대해서 패널·상급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했다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미국 및 캐나

다는 EU의 새로운 조치를 여전히 SPS협정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관세율의 인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EU는 미국 및 캐나다에 의한 대항조치의 계속은 GATT 및 DSU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해서 2004년 11월에 양국에 대하여 협의요청을 하고 2005년 2월에 패널이 설치되었다.

(5) 시사점

각국의 기준인증제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경우 수출국이 각국의 규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국제적으로 정합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제조·판매에 쓸데없는 비용을 요하고 자유무역의 원활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 당해 조치가 내외 차별적 효과나 수량제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을 부당하게 왜곡할 가능성도 크다. 자유무역을 한층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후 기준인증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정·운영에 관한 투명성의 향상 및 내외무차별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 위생식품검역제도는 국외로부터의 질병 및 병충해의 진입을 방지할 것으로 목적으로 수출국에서의 발생상황 및 수입국에서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기술적 근거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위생식품검역제도에는 그 자체로 차이가 발견되지만 이것들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주요 외국의 기준인증제도 비교분석

1. 미 국

미국의 인증제도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발전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사업자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의 참여가 높아 가장 효율적인 인증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 적합선언에 인증제도의 기반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노력이 미흡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할 때 필수항목에 대해 해당 부처별로 직접 적합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 및 식품의약품 등 소비자의 위험노출빈도가 높은 중요분야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별도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되 기타 공산품 분야에 대하여는 정부에 의해 지정된 국가승인시험소의 인증마크를 획득하도록 하여 민간의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해 국제 인증제도를 선도하고 인증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미국의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평가될 수 있다.

(1) 정보통신 분야

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보호라는 목적 아래에서 전파지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전기 및 전자제품의 불요전자파를 규제하고 있다.

인증업무를 일부 민영화하여 인증기관을 복수화하고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였으며 제조자 적합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통신통신법에 의거하여 규제를 하고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및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C는 Certification, Doc, SDoc, Verfication 4가지로 인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 미연방통신위원회는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상당한 양의 연방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통신분야 업계간의 자율규제(self-regulate)로 대신하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시험·인증의 상호승인을 가능하게 하고 기기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민간화와 복수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민간인증기관인 TCB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법령구조

인증과 관련된 법령은 1934년 제정된 통신법과 연방규정집, FCC명령, 관련보고서(Notice) 등에 규정되어 있다. 연방통신법 제251조, 제255조에 정보통신기기시험인증관련 일반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규정(CFR)Title 47에서는 인증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민간인증기관지정 및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무선기기의 인증 관련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FCC 고시에는 민간인증기관의 운영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인증제도

FCC 인증제도는 수정통신법 및 47FCR Part 0-19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전역의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공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기 및 구성요소에 대한 규제와 인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인증형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파발생장치에 대해 발생기준을 설정해 놓고, 승인을 신청한 제품이 기준에 따라 제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판매 또는 수입 전에 인증 또는 승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한다. 통과 시에는 FCC 소정의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다. 다만 FCC 인증은 모든 대상 제품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3가지의 차등적인 인증형태¹²⁾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2) Certification은 스캐닝 리시버, 의도된 방사체 등과 같은 제품들에게 필요한 인증 방법이다. DoC(Declaration of Conformity)는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크를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인증 제도이다. Verification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3) 인증체계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은 국가기관인 FCC와 민간인증기관인 TCB를 통해 수행한다. FCC는 인증규제완화 이후 일부 무선기기에 대한 인증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인 TCB에 위탁하거나 제조자들이 스스로 기술규제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선언제도(Doc/SDoS)을 운영하고 있다.

FCC는 인증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역할로 그 기능이 변화하고 있고 주로 민간 인증기관 및 민간인증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인정기관의 지정과 민간 인증기관들의 관리감독, 시장 내 유통되는 인증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소비자불만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공산품 분야

미국 내 유통되는 공산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인증제도는 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지정 고시한 660여개 공산품(컴퓨터, 모니터, 가전기기, 가스장비 등)에 대하여는 NRTL 인증마크를 받아야 미국 내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OSHA는 독자적인 인가절차 및 요건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을 국가승인시험소로 인가한다.

인증체계는 OSHA로부터 지정된 NRTL로는 현재 18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다. NTRL 18개 기관 중 UL, CSA, TUV, ISTNA 등이 대표적 기관이며 이들 기관의 경우 200여개 이상의 인증규격 범위를 보유하고 있다.

(3) 식품, 의약품 등 분야

1930년대 정식 출범한 FDA는 미연방 식품, 의약,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미국 전역의 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동물용 약, 동물

사료, 방사선기기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검사 및 승인, 제품 사후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제재, 수입, 수출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사전검사, 사후검사, 수입검사로 구성한다.

기타 인증제도는 각 분야별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다. 농산물, 항공운송,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련 등 농림부, 상무부 등 11개 기관이 각 부처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

(4) 민간 인증마크 제도

미국에는 민간, 단체, 협회 등이 운영하는 UL, MET, ETS 등 세계적인 100여개의 제품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890년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전기제품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을 배경으로 UL(Underwriters Laboratory)이 설립되었다. 특별한 근거법규 없이 전기·전자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표준을 제정하고, 시험검사 및 인증 기능(UL인증마크 부여)을 수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이나 연방정부, 주정부, 일부 지방정부들이 이 기준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관여하며 정부조달 제품 선정시 UL인증을 필수사항이나 입찰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유럽연합

유럽국가의 인증제도 및 인증마크는 경우 개별국가 별로 자국에 맞는 제도와 마크를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다가 EU경제 통합이 진행되면서 유럽내 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국가의 규격 및 적성평가 절차를 통일하고 통합마크 CE마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마크인 CE마크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마크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CE마크와는 별도로 자동차 및 동 부품의 경우 e-mark, 환경물질 규제 등 강제인증마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개 요

1985년 기술 통합과 표준화를 앞당기고 EC시장 통합의 방법으로 서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장벽 제거를 추진하였다. 각 국별로 차이가 큰 신체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만을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럽연합은 주요 산업분야에서 수 천 가지의 서로 다른 국가 규격들을 대체하기 위하여 조화되고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규격들을 개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국가의 규격관련 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충돌하고 이는 무역에 대한 비용적인 장벽 및 기술적인 장벽이 되고 있었다.

유럽전체에 걸치는 규격을 제정하기 위하여 GEN¹³⁾ 등 유럽규격 표준화 기구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유럽 단일 시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안전, 환경, 품질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CE 마킹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체계

1998년에 21개 분야별 규범(Directives)을 제정하였는데,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는 법적 구속력의 강도에 따라 지침(Directive), 규칙(Regulation), 결정(Decision)으로 나뉘며 그밖에 법령은 아니나 입법 자료로서 활용되는 녹서(Green Paper), 권고(Recommendation) 및 의견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13) 유럽표준위원회(G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유럽지역내 무역 촉진을 목표로 유럽 규격 이행을 촉진하고자 유럽연합 15개국과 자유무역연합(EFTA) 6개국 표준기관들에 의하여 1961년 발족된 양기국 소속의 비영리 국제연합기구이다.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 | 지침 | 규칙 | 결정 | 권고의견 |
|-----|---|---------------------------------|---------------------------|--|
| 성격 | 녹서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인 입법사항 |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규정할 입법사항 | 특정한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 규정할 입법사항 | EU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상적인 행정조치 |
| 강제력 |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 집행위원회는 가이드라인제시하고 실행은 회원국에 위임 |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 저촉하는 개별회원국 국내법은 무효 | 특정대상(국가, 기업 및 개인)일 때만 구속력 | 법적 구속력이 필요치 않음-향후 규칙, 지침결정으로 대처 가능 |

(3) 기준인증제도

1) 개요

EU의 시장통합이 추진되면서 물건의 자유로운 이동의 장벽이 되는 것이 가맹각국이 독자적으로 두고 있던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의 기준을 정한 규격이었다. EU에서는 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1985년에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여 제품의 역내의 원활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기술적 조화와 기준에 관한 뉴어프로치”를 채택했다. 이 어프로치에 의한 역내의 제품규제의 통일은 1985년의 결의를 포함하여 다음의 세 가지가 중점이 되어 있다.

① 1985년의 이사회 결의 “기술적 조화와 기준에 관한 뉴 어프로치”¹⁴⁾
역내에서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1989년의 이사회결의 “인증과 테스트에 관한 글로벌 어프로치”¹⁵⁾
주로 제품의 적합성심사에 관한 EU의 정책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③ 1993년의 이사회결정¹⁶⁾

적합성심사에 대하여 일반 가이드라인과 상세한 절차를 정하고 글로벌 어프로치는 완성, CE마크가 도입되었다.

1985년의 결의를 받아서 구체적인 제품분야나 특성분야별로 충족해야만 할 필수요구기준을 설정한 EU지침이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가맹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내의 법규를 정비하고 제품분야·특성분야마다 역내 공통의 안전·품질기준이 완성되었다. 이 어프로치에 기초하여 제품의 안전성이나 품질 등의 규제통일을 정한 지침을 특히 “뉴 어프로치지침”이라 한다. 뉴 어프로치지침은 제품분야별·특성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적합성심사의 규정이나 CE마크 도입을 위한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수의 지침과 그 개정지침도 있다.

1985년 결의에 제시된 뉴 어프로치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규제에 의한 조화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에 충족해야만 하는 필수요구사항에 한정되며 이 필수요구사항은 각 뉴 어프

14) Council Resolution of 7 May 1985 on a new approach to technical harmonization and standards(85/C 136/01)(Official Journal C136, 04/06/1985)

15) Council Resolution of 21 December 1989 on a global approach to conformity assessment(90/C 10/01)(Official Journal C010, 16/01/1990)

16) 93/465/EEC : Council Decision of 22 July 1993 concerning the modules for the various phases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the rules for the affixing and use of the CE conformity marking, which are intended to be used in the technical harmonization directives(Official Journal L220, 30/08/1993)

로치지침에서 규정한다.

- 각 뉴 어프로치지침에서 정한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의 기술사양은 유럽정합규격(Harmonised Standards)으로서 유럽의 각 표준화기관(CEN/유럽표준화위원회, CENELEC/유럽전기표준회의,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이 정한다.
- 정합규격의 채용은 임의이지만 정합규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기관이 시험해서 증명한다.
- 정합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지침이 정한 필요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간주되며 가맹각국은 제품의 이동의 자유를 보증한다.

글로벌 어프로치는 뉴 어프로치를 보완하는 것으로 뉴 어프로치지침의 규정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모듈”이라는 생각을 도입했다. 심사방식은 제품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가맹각국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듈에 의하여 정형화하는 것으로 심사방식의 역내에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2) 뉴 어프로치의 기본적 특징

① 적용범위

EU역내에서 제조된 제품 및 역외에서 수입된 신제품 혹은 중고품이 대상이 된다. 제품이 어느 뉴 어프로치지침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할 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다. 제품이 복수의 지침에 관련된 경우도 있다. 자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뉴 어프로치지침이나 그밖의 지침·규칙이 없는 경우 또는 뉴 어프로치지침이나 그밖의 지침·규칙에서는 모두의 안전성이나 리스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일반 제품안전성지침”이 적용된다.

② 제조업자의 책임

제품이 뉴 어프로치지침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조업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위임대리인은 EU 역내를 거점으로 하여야 하며,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지침에 정해진 의무를 진다. 다만 제조업자에게는 위임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역외에서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자는 역내에 제조업자의 거점이 없고 제조업자의 위임대리인도 없는 경우 제품의 유통으로 책임을 진다.

③ 필수요구사항만을 규정

각 뉴어프로치지침은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때 충족해야만 할 안전이나 품질로 최저한 지켜져야 하는 “필수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기술적 요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필수요구사항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이다. 기술적 요구에 대해서는 각 유럽표준화기구가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적 사양으로서 정합규격을 정한다. 정합규격은 유럽의 EN규격 등이 되며 이 정합규격에 적합하다면 자동적으로 뉴 어프로치지침의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하게 된다.

④ CE마크의 도입

1993년에 뉴 어프로치지침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제품에 CE마크를 붙여야 할 의무가 도입되었다. CE마크가 붙은 제품이라면 지침이 정한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침에서 정한 적합성 심사의 절차에 따른 것을 나타낸다. 다만 일부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 뉴 어프로치지침에서는 CE마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있다. CE마크의 첨부 의무가 있는 경우는 각 뉴 어프로치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제품에 따라서는 복수의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닌 경우도 있는데 CE마크는 해당하는 모든 지침의 모든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CE마크는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합규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⑤ 적합성심사절차

제조업자는 EU역내시장에 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해당하는 뉴 어프로치지침에 규정된 적합성심사절차를 거칠 의무가 있다. 모쪼록 정형화된 심사방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3자의 적합성심사기관(공적인증기관)이 관여할 것이 필요한 제품도 있는데 뉴 어프로치지침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약 80%는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적합선언만으로 제품을 역내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다.

⑥ 세이프 가드조항과 강제조치

뉴 어프로치 지침에서는 지침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제품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세이프가드(긴급제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세이프가드조항에서는 지침에 위반한 제품이 유통하고 있는 경우, 가맹각국은 제품의 유통 제한이나 시장에서의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 가맹각국은 유럽위원회에 통지하고 유럽위원회가 그 초지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전 가맹국에 대해서 통지하고 가맹각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

3) 뉴 어프로치에서의 표준화

뉴어프로치 지침에서 규정된 필수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술규격은 각 유럽표준화기관이 채용한다. 이 유럽정합규격은 유럽위원회와 각 유럽표준화기관간에 합의된 일반가이드라인(General Guidelines)에 적합한 것으로 유럽위원회가 가맹각국과 협의하여 제시한 지시(mandate)에 기초하여 개발된다. 유럽의 정합규격의 개발과 가맹각국의 국내규격의 정비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 ① 유럽위원회가 가맹각국과의 협의에 따라 지시한다.
- ② 지시를 유럽표준화기관(CEN, CENELEC, ESTI 모두)에 전해지며 유럽표준화기관은 지시를 접수한다.
- ③ 유럽표준화기관은 규격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표준화기관내의 기술위원회가 규격을 작성한다.
- ④ 유럽표준화기관과 가맹각국의 표준화단체는 공적 자문을 개시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기술위원회가 검토한다.
- ⑤ 규격안에 대해서 가맹각국의 표준화단체가 결의하고 유럽표준화기관이 비준한다.
- ⑥ 유럽표준화기관이 유럽위원회에 레퍼런스를 송부하고 유럽위원회는 그 레퍼런스를 공표한다.
- ⑦ 가맹각국의 표준화단체는 이 유럽규격에 기초하여 국내규격을 정하고 가맹각국의 정부가 국내규격의 레퍼런스를 공표한다.

4) 뉴 어프로치지침의 수정에 관한 2003년 유럽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유럽위원회는 2003년 5월에 뉴어프로치지침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Eu역내의 제조업자나 적합성심사기관, 행정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기초로 2003년 5월에 “뉴 어프로치지침의 실시 강화”¹⁷⁾라는 제목의 유럽위원회 권고를 포함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제안의 내용을 2003년 11월에 이사회결의¹⁸⁾로서 받아들이고 유럽위원회에 대해서 제안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pproach Directive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3) 240 final], Brussels, 7.5.2003

18) Council Resolution of 10 November 2003 on the Communic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pproach Directives’(2003/C 282/02)(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282, 25.11.2003)

2003년 유럽위원회 제안 “뉴 어프로치지침의 실시 강화” 개요

| ① 공적인증기관 | |
|----------------|--|
| 통지절차 | 가맹각국에 대하여 통지절차에 관한 당국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특히 다른 가맹국에 대한 통지의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함 |
| 공적인증기관의 리스크 공표 | 통지로부터 리스크 공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쇄물에서 이미 일부 도입된 온라인통지시스템으로 대체할 것 |
| 통지에 관한 법적 틀 | 각 지침에서는 공적인증기관을 통지하는 법적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 공적인증기관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상세함이 없이 가맹국의 권한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통지의 투명화에는 공적인증기관이 충족해야하는 법적 요건을 통합할 필요성이 검토과제가 됨. 대응으로서는 포괄적인 지침의 일부로서 도입할 것인가 각 지침에 같은 조항을 도입할 것인가 어느 쪽이 됨 |
| 인증기관의 인정 | EU역내에서의 인증기관 인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인정에 사용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다만 최종적인 책임은 가맹각국에 맡겨짐 |
| 공적인증기관의 감시 | 공적인증기관에게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뉴 어프로치지침에 공적인증기관이 공정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나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국경을 넘는 활동 | 공적인증기관이 EU역내에서 제약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협력의 일환으로 공적인증기관의 인정국과 공적인증기관이 활동하는 국가 간에 정보교환절차의 확립을 지원함. 이를 위해 각 뉴 어프로치지침 또는 포괄적인 지침으로 법적 근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제3국과의 관계 | 제3국의 적합성심사기관이 EU의 공적인증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 협력과 정보교환 | 공적인증기관이 부적합제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함 |

| | |
|--|--|
| ② 적합성 심사절차 | |
| <p>하나의 제품에 복수의 지침이 관련되어 제조업자가 적합성심사를 복수의 공적인 증기관에 요청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경우, 인증비용의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함. 모듈 가운데 H, E, D는 공적인증기관에게 의뢰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증기관의 심사가 필요한 제품에는 기존 및 이후의 뉴 어프로치지침에서 3가지 모듈을 도입하도록 한다. 또 적합성심사절차의 정의를 명확히 함</p> | |
| ③ CE 마크 | |
| <p>가맹각국과 유럽위원회는 CE마크는 상업상의 품질보증마크가 아니라 적용되는 통일규정에 제품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 CE마크 남용의 문제를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음. 경험에 기초하여 불명료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법조문을 명확히 해서 CE마크의 지위를 강화할 것을 유럽위원회에 제안할 가능성도 있음</p> | |
| ④ 실시와 시장감시 | |
| 각 당국의 분리 | <p>시장감시는 각국 당국의 책임이지만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당국이나 인증기관, 적합성심사기관, 시장감시당국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해의 충돌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p> |
| 시장감시의 공통 수준 확립 | <p>각국의 시장감시수준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하의 기준에 입각하여 시장감시의 공통수준을 둘 필요가 있음. 또 가맹각국에 의무로 되어 있는 시장감시의 기본 룰을 포괄적 지침 또는 각 지침에 포함하여 법적 틀을 수정할 필요성을 검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 사고데이터의 분석에 기초한 전략적인 시장감시프로그램 ● 부적합의 정도에 따른 벌칙 ● 시장감시당국과 직장의 건강·안전의 감시당국, 세관당국 등 그 밖에 기관과의 효과적인 의견교환과 연계 ● 정보교환 등 그밖의 가맹국 당국과의 협력에 대한 전면적 참여 |
| 행정협력의 | <p>뉴 어프로치지침에 각국간 행정협력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도입</p> |

| | |
|--------------------|---|
| 강화 | 할 방침. 또 행정협력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처함 |
| ④ 실시와 시장감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당국간의 정보교환을 중심으로 한 행정간 상호지원 • 관련한 행정협력그룹의 목적이나 법적 근거 등의 명확화 • 부적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 • 위험한 제품에 관한 정보에 대한 일반의 접근 • 기업의 모범사례 보급 |
| 세이프가드조항 | <p>각국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 유럽위원회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장기간에 걸치고, 그동안 제조업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세이프가드조항에 대해서 법적 틀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것은 EU역내에서의 통일적 어프로치를 촉진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역내시장을 효과적으로 기능시킴</p> |
| ⑤ 뉴 어프로치지침의 효과적 시행 | |
| 법적 틀의 수정 | <p>제품에 따라서는 복수의 지침이 관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유럽위원회에서는 공통지침을 만듦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위하여 표준조항을 책정하는 작업그룹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 공통지침에 따라 많은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음. 그러나 제품마다 규정된 적합성심사절차와 같은 개별문제는 해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뉴어프로치지침간 상이성 • 지침에 따라서 적합성심사 등 서로 다른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 • 하나의 뉴 어프로치지침에서 새로운 모줄이 도입됨에 따라서 같은 제품에 관한 다른 지침의 규정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지침에 따라서 각각 다른 요구사항 |
| 아웃 소싱 | <p>뉴 어프로치지침의 실시는 가맹각국 및 유럽위원회에게는 대단한 행정부담이 되고 있음. 그래서 유럽위원회에서는 외부컨설턴트의 이용이나 특정업무를 기술적전문기관에 아웃 소싱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함. 이 경우에 유럽의약품심사청(EMEA/European Medicines Evaluation Agency)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p> |

(4) 유럽연합 규격제정기관

CE 마크 인증은 EU 각 회원국의 정부기관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행하며 CE 마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전담기관은 없다. 따라서 유럽지역은 19개 국가에서 24개 인정기구를 두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31개국 1,439개 기관이 있다. 유럽연합의 인증체계는 크게 유럽 국가간 통용되는 CE 마크 중심의 모듈별 인증체계와 유럽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별 인증체계로 구분되며 두 인증체계가 병행하여 운용되고 있다.

EU 차원의 인정협력 기구인 EA와 범 유럽차원의 시험 및 인증기구인 EOTC에서 3개의 표준관련 기구에 의해 표준규격이 제정된다.

규격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계와 정계 및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규격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기 통신 관련 유럽규격은 GEN, CENELEC, ETSI 등 3개의 기관들에 의해서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가 받았다. 유럽규격의 개발이 시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 규격의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럽규격은 각 EU회원 국가의 규격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1) 유럽표준위원회(CEN)

유럽지역내 무역촉진을 목표로 유럽규격이행을 촉진하고자 유럽연합 15개국과 자유무역연합 6개국 표준기관들에 의하여 1961년 발족된 양기구 소속 비영리 국제연합기구이다.

1919년10월25일 CEN법령에 의거한 국가표준기관과 유럽연합이나 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국가 표준기관(각국당 1개 표준기관만 회원 자격

허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능은 유럽지역의 제조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제품, 시험방법 등에 관한 유럽 규격 제정, 유럽연합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유럽각국의 표준기관과 협력 도모, 유럽내의 표준화 이행을 통한 기술장벽 제거로 상품과 서비스 교역 촉진, 적합성 평가를 통한 유럽시스템과 적합성 평가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인정 절차 개발, 유럽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CEN마크를 인증해 주는 인증기관을 운영한다.

2) CEN규격 제정 절차(CEN/CENELEC 내부규정 PART 2 규정)

유럽 규격은 위생,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 공공 이익과 직접관계된 제품은 상품의 자유 이동과 관계된 EU지침서에 규정된 필수요건을 충족 시켜야만 수입 판매 가능하도록 기술적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CEN은 전자기술분야(CENELEC)와 전기통신분야(ETSI)의 표준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표준을 취급하고 있다.

① 규격 제정 계획안 작성(Programming)

기술부(BT)가 규격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하부기구인 해당 기술 담당과에서 표준화 프로그램 규정과 관리를 담당한다. 프로그램 계획 위원회(PCs)는 기술부 자문 업무와 해당분야의 표준화 조정 및 기획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② 기술적 작업(Technical Work)

CEN 국가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 TC(기술위원회), PQ(설문조사) 및 ISO(국제표준화기구) 절차 중에서 한 절차를 선택하여 유럽 규격을 제정한다. 기술 위원회는 유럽기준 (EN) 제정시 각국의 이해 관계를 대변할 CEN 국가회원 대표들로 구성되며 CEN국가회원과 기타 관련 유럽 국제 기구들이 제시한 규격 제정 완료 시기를 포함하여 규격 적용

범위의 타당성 고려한다.

국제 규격이 이미 제정되어 있을 경우에 기술 위원회의 규격 제정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다.

③ 유럽 규격(EN) 채택을 위한 CEN 내부 절차 규정

규격 제정안이 승인되면 국가 수준에서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 CEN 회원국에 회부하고 CEN 회원국들의 투표로 최종 규격안 승인을 결정한다.

④ 각 국가별 유럽 규격 이행

유럽 규격으로 채택되면 CEN 회원국들은 유럽 규격을 국가 규격으로 채택이행해야하며 이와 상충되는 국가 규격은 폐지해야 한다.

3) CEN 제품 인증 제도

CEN는 CENCER(인증위원회)를 설립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임의적인 인증을 위해 유럽제품의 유럽규격에의 부합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유럽적합성 마크와 시험 검사에 대한 상호 인정을 위한 절차 개발한다.

유럽 규격과의 부합성 추구의 일환으로 CEN 기술위원회에 기술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 검사 절차 및 기타 필요 요건에 대한 유럽 규격안 지침서가 제출되어 CEN 기술위원회가 199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 시험 및 인증 유럽기구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는 EU 및 EFTA 18개 회원국과의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고 1992년 이후 역외국과의 상호 인정 행정 체결을 위한 공동기술적 조건을 설정하기 위

하여 설립되었다.

기능은 유럽 인증 제도 개발,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에 대한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비규제 분야 품목에 대한 부합성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EU와 EFTA국가들의 입법 활동 및 기술 지원 제공하여 역외국과의 상호 인정 협약 체결을 위한 기술적 조건을 설정한다.

5) EUROLAB(European Testing Laboratories)

EOTC의 시험, 검사 업무 담당 전문 기구로 1990년 4월 브뤼셀에 설립되었다. 시험과 검사 방침의 통합 및 조화를 가속화하여 관련 기관과 시험 검사소간의 기술적 협력을 추진한다. 유럽 규격 EN 45000 시리즈를 적용하고, 시험 검사에 있어서 소급성 및 품질보증을 진전시켜 시험 검사 결과의 상호인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3. 일 본

일본의 인증제도는 강제인증제도와 임의인증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강제인증제도 중 제품 안전의 경우 PS 마크로 통합표시하고 있다.

(1) JIS 제도

JIS(일본공업규격)은 공업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 규격이다. 일본의 JIS 규격은 ISO 규격에 준거되어 품질, 환경, 정보 시스템 규격이 각각 ISO로부터 정식으로 발행되어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업 표준화 제도는 공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일본공업규격(JIS)와 일본 공업규격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규격의 목적은

제품 품질, 호환성, 안전성의 확보이며 대상은 식품, 농림 분야를 제외한 공업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사용이며, JIS 마크 표시 인정 건수는 13,000건이 넘는다.

JIS 마크표시제도는 인정을 받은 생산자가 자기책임 하에 제품에 JIS 마크를 표기하는 것으로 JIS 마크 표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JIS에 적합한 상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2) JAS 제도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림물자의 품질개선, 생산의 합리화,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사용·소비의 합리화에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물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대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 표시기준 제도가 포함된다.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등록 인정 기관이 된다. 대상품목은 모든 음료 및 식료품이다.

(3) 전기용품 안전법 및 PSE 마크

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고, 기준 적합 확인하고 자주검사해야 하며 판매에 있어서는 적합성 검사의 수검 표시를 해야 한다.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지 않고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PSE는 200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450개 전기 용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PSE 마

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제품구입시에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가정용품의 품질에 관한 표시를 적정하게 하도록 요청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섬유제품 35개 품목, 합성수피 가공품 8개 품목, 전기 기계 기구 17개 품목, 잡화 공업품 30개 품목이다.

(4) SG 마크

1973년 10월에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법에 근거하여 통상 산업성의 특별 인가의 법인으로 설립된 제품 안전 협회가 안전을 보증하는 마크로 제도화 한 것이다. 대상 제품별로 안전성 품질에 관한 인정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만 SG(Safe Goods) 마크를 표시한다. 또 만일 제품의 결함에 의한 인명 손상 및 사망 사고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배상 조치가 실시된다.

대상품목은 유아용품, 복지용품, 가구 및 가정용품, 주방용품, 원예용품, 가정용 피트니스용품, 스포츠 레저용품, 자전거 용품 등이다.

(5) 기준인증일괄법의 개요

일본은 1999년에 기준인증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통상산업성은 자기가 소관하는 기준·인증 관련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이하 “기준인증일괄법”이라 한다). 1999년 개정에서는 새로운 기준인증의 형태인 제3자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정기관제도도 공익법인 요건을 철폐하는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 바 있다.

이 법률 개정의 목적은 “사업자의 안전확보기능 향상에 의한 사고

감소를 포함하여 종래 정부가 중심이 되어 행해 왔던 기준·인증제도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서 관민의 역할분담을 수정하고 규제를 합리화 하면서 소비자의 안전등의 유지·향상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① 사전규제의 합리화와 ② 검사·검정 등의 업무에의 민간능력의 활용, ③ 사후조치의 충실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 ① 사전규제의 합리화에서는 기준의 확인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검사·검정 등의 업무를 가능한 사업자에 의한 자기확인으로 이행 또는 자주보안을 도입한다. 위험성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민간 제3자기관에 의한 검사·확인등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을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정대행기관에 제도를 개방한다.
- ② 검사·검정등의 업무에 민간능력의 활용에서는 검사·검정 등을 행하는 정부의 지정대행기관을 공익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이후에는 민간제3자기관 및 지정대행기관에 대해서 중립성등의 일정한 요건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③ 사후조치의 충실에서는 ①, ②의 합리화조치에 대응해서 벌칙의 적정화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6) 기준인증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일본은 2009년 1월에 “기준인증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과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라는 검토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우선 기준인증정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는 정보통신, 첨단분야에서의 국제표준획득 경쟁이 치열해지고 WTO/TBT협정을 계기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중국이 활발한 국제표준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등 새로운 분야의 국제표준화논의가 활발해지고 있

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표준화 논의가 있으며, 소비자와 산업계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 대두 등 국내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경쟁력 강화, 유통인프라 정비 등 산업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소비자보호 등 소비자정책, 환경정책, 대외 무역정책 등 각종 정책에서 기준인증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은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일본은 국제표준화기반 형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의 표준화 강화, 제품안전관련법규·소비자법규 등에서 기준인증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4. 중 국

중국의 인증제도에는 법령등에 근거한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강제인증제도) 마크제도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는 임의의 인증제도가 있다.

강제인증제도 가운데 CCC마크제도는 국무원으로부터 수권받은 CNCA(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임의 인증제도는 몇 개의 인증기관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CCC마크의 대상제품에는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자동차 등 총 158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안전성이나 EMC가 시험항목의 대상이다.

(1) CCC마크제도 관련 정부조직

중국의 표준화·인증을 하는 정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품질감독험험검역총국(AQSIQ)가 국무원의 직할관리하에 있으며, 중국국

내제품이나 수출입품의 품질검사나 각종 인증인가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아래 GB규격의 제정 등을 주된 사무로 하는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CCC마크제도의 전반적인 관리 등 중국에서의 인증인가제도의 감독관리부문인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가 있다.

1) 국가품질감독험험검역총국(AQSIQ)¹⁹⁾

AQSIQ는 국가강제인증의 제도 및 규정을 작성하며, 강제인증제품대상품목리스트를 심사·승인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공동으로 공표한다.

2)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²⁰⁾

CNCA는 강제인증제품대상품목리스트를 입안하고 “제품인증실시규칙”을 발행한다. 인증마크의 결정 및 공표, 인증서의 요구사항을 확정한다. 인증업무를 실행하는 인증기관, 시험소, 검사기관 및 인증마크의 발행기관을 지정한다. 인증을 취득한 제품 및 그 기업목록을 공표한다. 지방품질검사기관에 대하여 강제인증의 위법행위등의 감독방법을 지도하고, 강제인증에 관한 고충 등을 수리한다.

3) 그밖에 관련 행정기관

그 밖에 CNCA의 산하에 있는 중국합격평정국회인가위원회(CNAS)는 2006년 3월 1일부터 중국시험소국가인가위원회(CNAL)와 중국인증기구국가인가위원회(CNAB)가 합병하여 설립된 것이며, 중국인증인가협회(CCAA)는 2005년 9월 27일에 중국심사원 및 심사원연수기관국가인가위원회(CNAT)의 명칭변경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다.

19) AQSIQ는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의 약어임

20) CNCA는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어임

(2) CCC마크 대상품목

CCC제도 초기에는 19종류 132품목이었으며, 2007년 3월 현재 22종류 158개 품목이 CCC마크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 대상품목(대분류) | 상 세 |
|----|-------------------------------------|--|
| 1 | 전선·전기케이블류 | 콘센트, 정격전압 450/750V이하의 고무절연전선케이블 등 6개 품목 |
| 2 | 전기회로스위치, 보호용 또는 접속용 전기기구 | 기구용접기, 플러그소켓 등 6개 품목 |
| 3 | 저압전기기구 | 누전보호장치, 휴즈, 스위치등 9개 품목 |
| 4 | 소출력전동기 | 소전력전동기 |
| 5 | 전동공구 | 드릴, 전동철탄소등 16개 품목 |
| 6 | 전기용접기 | 소형 아크용접기 등 15개 품목 |
| 7 |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기기 | 전기냉장고 및 냉동고, 에어컨, 전동세탁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등 18개 품목 |
| 8 | 음향설비류(라디오방 송용 음향설비 및 차량용 음향설비는 불포함) | 라디오수신기, 컬러텔레비전수상기, 각종 재생·녹화·녹음용 레코더 플레이어 및 그 조정용설비(CD, DVD등을 포함)등 16개 품목 |
| 9 | 정보처리설비 | 소형 컴퓨터, 복사기 등 12개 품목 |
| 10 | 조명설비 | 조명기구, 안정기 |
| 11 | 통신단말기기 | 모뎀, 팩시밀리, 무선전화단말 등 9개 품목 |
| 12 | 차량 및 안전부품 | 자동차, 오토바이 등 4품목 자동차용 램프제품 등 13품목 |
| 13 | 타이어 | 승용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타이어 등 3품목 |

| | 대상품목(대분류) | 상세 |
|----|-----------|-------------------------------------|
| 14 | 안전유리 | 차량용안전유리, 건축용안전유리등 3품목 |
| 15 | 농업용기기류 제품 | 식물보호기기(분무기등) |
| 16 | 라텍스제품 | 콘돔 |
| 17 | 의료용설비 | 의료용렌트겐진단장치, 혈액투석장치, 심전계, 인공심폐기등 7품목 |
| 18 | 소방용 제품 | 화재경보기, 소방용호스 등 3품목 |
| 19 | 방법장치 | 침입센서 등 4품목 |
| 20 | 장식내장제품 | 도자기타일 등 3품목 |
| 21 | 완구 | 아동용 차, 전기, 플라스틱류 등 6품목 |
| 22 | 무선 LAN제품 | 무선 LAN제품(정부조달한정) |

(3) 인증제도의 법적 체계

중국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는 중국표준화법, 중국제품품질법, 중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중국인증인가조례 등이 있다. 이 중 인증활동, 적합성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은 중국인증인가조례이다.

CCC인증제도에서는 GB규격만을 참조하고 있으며, 중국표준화법 제 14조에서 규격에 합치하지 않는 제품은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규격은 수시로 갱신되며, 국제규격에 맞추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인증제도의 운용주체

실질적으로 인증제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CNCA이며, CCC대상품목의 확장이나 그것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하고 있다.

인증기관수에 제한은 없고 인증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며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CNCA는 인증품목의 하나의 범주에 대해서 두개의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있으며 상호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CQC가 가장 큰 인증기관이며, CCC마크제도 대상품목 가운데 144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다. 인증기관마다 인증할 수 있는 제품의 범주가 CNCA에 의하여 결정되며 또 인증시에 인증기관은 시험소를 CNCA가 지정한 시험소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한다. 인증기관의 주된 책무는 다음과 같다.

- CCC마크제도의 인증실시규칙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CCC마크제도의 인증업무를 행한다.
- CCC마크제도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 및 관련기업에 CCC인증서를 발행한다.
- CCC마크제도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 및 관련제조업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한다.
- CCC마크인증서의 일시정지, 취소 및 철회를 한다.
- CCC마크제도의 인증제품 및 인증신청서의 고충 등을 처리한다.
- 인증기관은 CCC마크제도의 인증제품의 인증서에 책임을 진다.

인증기관과 시험소는 상호 독립적이며, 시험소는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며 마크의 발행은 하지 않는다.

공장검사시에는 인증기관과 시험소로부터 각각 직원이 파견되며 제품은 시험소의 직원이, 공장의 관리시스템은 인증기관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제품과 관리시스템을 동시에 검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EU의 CE마크에서의 적합성평가방법과 같으며 모듈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5) 규격작성의 표준화프로세스

규격작성은 ISO와 같은 체제 및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는데 탑다운(top-down) 또는 bottom-up 방식 양자를 병행한다.

중국표준기술위원회가 작성한 안을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비준한다.

CNCA가 관계부문을 소집하여 GB의 규격작성의 요망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으며, TC라고 하는 기술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TC261인증용표준이나 TC260정보안전에 관한 표준은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표준규격이 완성되기까지 3-5년정도 걸린다. 또 표준규격의 개정시기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적합성의 관점에서 국제표준이 개정되면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서 개정한다.

(6) 사후규제

제품정보나 사고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지방의 기술감독국에 의한 일상감사제도가 있으며, EU와 같은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5. 주요 선진국의 인증제도 비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요 선진국의 인증제도는 미국의 FDA, FCC, UL, 유럽연합의 CE마크, 일본의 PSE, PSC, SG마크 등이 있다.

우선 미국의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방사선기기 등의 안전성과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미국의 식품의약품행정기관으로, 미 보건후생성 산하 연방정부기관이다. FDA의 제품검사는 1930년에 도입되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방사선 배출기기 등에 대하여 사전 검사 및 승인, 제품 사후 검사를 통한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체제 및 수입, 수출품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통신법에 의거하여 전기, 전자제품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이다. FCC의 주요기능은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해 승인 및 불필요한 전자파를 장애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를 1934년부터 하고 있다.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전화기, 팩스, 모뎀류) 등 전파발생장치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시키는 부품이나 구성요소이다.

미이행시 제재사항으로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마케팅(수입, 판매, 임대, 광고, 선적, 배포)행위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FDA나 FCC와 같은 강제인증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인 UL은 미국 최초의 제품안전시험 및 인증기관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종류의 제품 및 부품의 안전인증과 국제규격요건에 따른 경영 시스템 평가업무를 하고 있다.

1890년대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당시 새로 출시된 전기 접속부품과 제품의 사용 빈도가 잦아지면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William Henry Merrill은 1894년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보험사들의 지원을 받아 Underwriters' Electrical Bureau를 설립하였고, 그 후 Electrical Bureau of the National Board of Fire Underwriters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1901년 UL은 Underwriters Laboratories라는 명칭의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시험영역을 전기제품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전기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인증발급업무를 190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율규제이지만 일부 지방정부들은 UL인증을 필수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미이행시 제재사항은 UL인증이 없는

제품은 미국내 소비자가 구매를 회피하고 있으며 미국내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입·판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UL미인증 제품은 사실상 미국내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유럽연합의 강제인증제도인 CE(Conformite European)는 유럽적합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며 1990년 완구류를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다. 규제지역은 유럽 18개국 즉, EU 15개국과 EFTA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이다. 이 CE마크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위생, 건강 및 환경보호 제품의 적합성이 유럽연합이 정한 기본적인 조건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유럽공동체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도 유럽공동체 시장 내에서 유통되기를 원할 경우는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E마크를 부착하지 않는 대상품목은 유럽연합내의 반입, 유통이 금지된다. 단, 적용 대상품에 따라 자기적합성 선언에 의한 자기인증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품목도 있다.

일본에서도 PSE마크와 PSC제도, SG마크 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선 PSE(전기용품형식승인)은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하는 것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며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통상산업성이 주관하는 전기용품 형식승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형식승인과 매우 유사한 규격으로, 일본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전기용품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강제적인 규격이다.

그리고 PSC(소비생활용품 안전)는 1964년 S마크 표시제도를 실시한 이래 2000년 10월에 PSC마크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소비생활용품 중 구조, 재질 등이 일반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특히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제품」이라고 지정하여 정부에서 안전성의 규제 조치를 취하는 등의 특정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함과 동시에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제품으로는 가정용의 압력냄비, 승차용 헬멧, 등산용 로프, 유아용 침대, 레이저 포인트 등이 있으며, 표시 미부착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제품안전협회는 소비 생활용 제품에 대해서 인정기준을 작성해, 제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안전성을 기준으로 (127품목 기준 작성)에 의해 인정하며, 인정한 제품에는 그 취지의 SG마크를 붙인다. 만일 SG마크 첨부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제 4 장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제 1 절 인증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 인증제도 선진화정책의 기본방향

(1) 단계별 국가 인증제도 혁신

최근 인증제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안전, 품질 등 정부 규제차원의 인증에서 민간의 자율적 인증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내 역시 협회, 조합, 시험 연구원 등에서 자체규정과 기준에 따라 약 60여개의 민간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EU 등 주요국가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선진 인증체계 도입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국내 인증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사전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정부 중심의 인증관리를 민간 시험인증기관으로 이관하고 인증제도 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이 되고, 국내·외 공신력 확보도 곤란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표준·인증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증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국가인증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하여 중복혜소 및 비용절감,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리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제1단계로 2006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추진기반을 조성키로 하고 법·제도 기반조성 및 추진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가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표준심의회 산하에 국가표준 및 인증혁신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단계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기준과 제도정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인증인프라를 구축한다. 인증제도 정비를 위하여 선진형 모듈방식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인증기관 등록제, 국가표준·기술기준의 중복해소를 통해 국가대표 인증마크 도입을 고려하고 인증비용 34%의 절감 및 소요기간을 1/3에서 1/4로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인증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가시험·검사능력을 고도화하고 국제수준의 인정시스템을 확립하며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 및 주요수출국 기술수준의 85% 이상을 국내에서 시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시작되는 최종 3단계에서는 선진인증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된 바 있다.

(2) 국가인증제도의 전면 개편

정부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강제인증제도의 통합화, 법정 임의인증제도 개선, 민간인증의 제도적 관리,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제인증제도의 통합화 과제에서는 통합 인증절차를 도입하고 국가대표마크(National Mark)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정 임의인증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인증제도간 중복 해소와 임의 인증인센티브 정비와 상호인정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중복시험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상호인정하고 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인증제도간 상호 인정 확대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인증의 제도적 관리 부분에서는 민간 인증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민간 인증제도를 발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법정인증 영역과 민간인증 영역의 중복 부분

을 제거하여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으로 분리하고 민간인증 부분은 민간 인증협회의와 같은 민간심의 기구로 하여금 자율 운영 및 관리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정인증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민간인증제도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인증기관의 국제공인 인정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증절차와 기준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 방안으로는 범부처 기술수준 제정 시스템에 대한 혁신 방안과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연계 강화 방안이 있다. 특히 범부처의 기술기준에 대한 제정은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 및 시험방법 등 공통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가표준을 인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표준과 기술기준과의 연계 방안은 규격간 상호중복, 국제부합화를 고려한 체계적인 규격번호 부여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확보되어야 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증 설비·인력·절차의 국제 신뢰성 확보와 인증제도에 대한 지원기반 강화 그리고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의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인증제도에 대한 지원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정 임의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활용 편익을 증진하며, 서비스 및 신산업분야의 인증을 확대하고 국가 인증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상호인정협정은 대상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대상국

가별 인증제도, 신뢰성 등 협상 대응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상호인정 추진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수출시 받아야 하는 각 국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MRA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2. 민간주도의 표준정책기능의 강화

(1)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특성별 표준화전략 수립

생산기술에 의존하던 산업단계에서는 확립된 표준의 활용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했지만 원천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자체적인 표준의 확보 없이는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표준을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표준의 taker에서 maker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다.

(2) R&D-특허-표준화 연계로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 마련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및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서 R&D-표준연계를 추진하고, 특허기술의 실용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표준연계를 추진하여 R&D-특허-표준화가 상호연계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국제표준화기구 역할 강화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역할 강화와 표준결정 투표 등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전략으로 기술표준원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ISO/IEC의 정책위원회와 기술위원회에 임원으로서의 진출을 2012년까지 30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국가와는 표준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가 간 표준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을 위한 표준교육 실시 등 회원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ISO 이사회, 기술관리위원회(TMB) 등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표준전략 강화

원자재 부족, 고유가 등 표면화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에너지 경영, 신재생에너지, 철스크랩 등과 같은 표준을 해결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감 표준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국가지리정보, 신성장 동력 산업 등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표준의 활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표준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 표준 2만 3천여종과 단체표준 8천여종의 단위표준을 환경성과 품질이 결합되거나 안전과 품질이 결합되는 모듈표준으로 발전시키고, 각각의 단위표준을 연계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표준을 개발하여 산업현장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표준 이행·확산(SIP : Standard Implementation for Productivity)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전기 관리표준, 건물 자동화 시스템표준, 물류보안 경영표준 등의 이행매뉴얼 개발과 성과분석을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다양한 인증제도가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개별법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39개 강제인증제도에 사용하고 있는 인증마크를 국가통합마크(KC : Korea Certification) 하나로 통일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심사절차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 심사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각 부처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08년 8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13개 인증마크를 국가통합마크로 통합하여 사용토록 하고, 20개의 인증심사 유형을 9개 유형으로 단순화 하도록 의결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인증제도의 중복도입을 방지하고 인증현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에 따라 18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정을 코드화하여 국가 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표준심의회 의결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 사용과 표준인증심사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6) KOLAS 제도 확대

FTA 이후 높아진 선진국의 시험·분석 서비스시장의 개방요구에 대응하고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확대하여 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인성적서(KOLAS)의 상호인정 국가를 50개국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화학·역학 등 11개 국제공인 인증분야를 의학·정보보호·법 과학 등 14개 분야로 확대하여 우리제품의 패스포드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시험기관의 대형화·전문화·브랜드화를 추진하여 ISO/IEC 국제표준대응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을 '07년 43%에서 '12년까지 80%까지 향상시켜 국내 시험기관의 국제적 공신력을 제고하여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선진화 추진

(1) 자율안전확인 확대 및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도입 추진

현재까지 추진해 오던 안전관리 정책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자율안전 확인품목의 비중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기로 하였다.

자율안전인증품목 확대를 위해 276종의 안전인증품목을 재분류하여 공장심사,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대상을 공급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안전확인 품목의 재분류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완전 민간 자율형인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구조, 처벌제도, 시장감시관련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

(2)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정부주도의 안전정책을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시판품 조사, 안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정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고, 인력에 의한 관리 방법도 한계에 달하여 종합적인 안전정책추진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기업·소비자·단체·정부 등으로 「제품안전 발전로드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품안전기술 개발지원과 안전관리제도 실용화 및 안전기준 선진화 등 3대 전략과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율안전관리, 자발적 리콜제 시행, 기업지원 근거마련 등 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3) 안전관리 주체별 분담체계 구축으로 책임안전 환경조성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각 주체별로 책임을 다할 때 활기찬 시장경제를 수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인증기관, 정부, 소비자 등

각각의 주체별로 제품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안전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다.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시장잠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기업은 위해발생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와 자진리콜을 통해 책임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인증기관은 불량률이 높은 제품유통시 해당 인증기관의 지정품목에서 제외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량 원인 분석·조치를 책임 관리토록 하고, 정부는 소비자에게 불량제품에 대한 구매주의보 발령 및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조치를 취하는 등의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각각의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책임안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법제정비방안

1.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도입 추진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압력용기 등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서 전문가를 통한 인증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공산품안전관리법·계량법·승강기제조관리법 등

공산품이나 계량기·승강기 안정부품 등은 국제기준(ISO 등), 단체규격(협회기준 등) 등의 유사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제품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호환성이 중요하여 사전에 존재하는 대체기준의 준용이 가능한 분야는 필요시 전문위원회도 병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무선설비기기나 전기통신기자재 등은 제품의 생명주기(life-cycle)가 짧아 빠른 시장출시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이므로(기술기준 제정 후 본인증) 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에 관한 최소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잠정인증하고 추후 본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절차적 법제정비방안

(1) 절차도입 및 명확화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차 등을 도입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22개 법령, 29개 분야, 1,247개 품목).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도입하고 절차, 기한, 방법 등은 최소한 시행규칙 이상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위원회 운영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기술기준 제·개정 신청권부여, 신청 후 15일 이내 기술위원회 부의, 15일간 의견수렴 후 기술기준 제·개정 등 명확한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의 운용이 필요하다.

(2) 기준제정 신청권 부여 확대

모든 법령 공통으로 일반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부여 및 행정기관의 검토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인증제도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누구든지 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 3제2항에서는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기준제

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표준기본법』의 성격상 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인증제도 전반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공통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인증제도의 통합적 운용 필요

(1) 신기술인증제도 통합

2006년 1월에 신기술 관련 5개 부처(舊산자·과기·정통·건교·환경부) 7개 인증제도를 NET(신기술인증)로 통합한 바 있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제도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술의 표시로 NET 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지식경제부(제품 제조·공정기술), 환경부(환경시설 공법기술), 국토해양부(건설 공법기술)에서 인증업무 수행 중이다.

공동 고시한 통합인증요령에 의해 NET(신기술) 인증대상(범위)을 구분하고 있는데 환경·건설분야 현장적용 공법기술(환경부, 국토부), 제품에 대한 제조·공정기술(지경부) 등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 포함되지 않은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등은 NET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마크를 사용하는 등 국민 및 기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 운영중인 보건신기술, 전력신기술을 ‘NET(신기술)’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력기술관리법’(지경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및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인증지원제도 정비 등 추진하여 수요자인 국민·기업의 혼란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

(2) 연료전지 중복 인증제도 개선

연료전지의 경우, 법정 설계검사와 임의 설비인증 획득시 검사항목이 중복되어 있다. 법정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설비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획득하여야 한다.

제품인증-설비인증 제도 비교

| 구 분 | 법정검사(설계단계검사) | 설비인증(성능검사) |
|----------|---------------------------|--------------------------------------|
| 적용 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
| 실시 기관 | 가스안전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
| 성 격 | 강제검사 | 임의인증 |
| 검사 효과 |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함 | 정부의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우선적용 및 정책 보조금 지원혜택 |
| 검사 항목 | (70개 항목) | (51개 항목) |
| | | |

이는 설비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시험항목의 대부분이 법정검사와 중복(43개 항목)되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비용은 약 1,200만원, 에너지관리공단 설비인증은 약1,4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이다.

중복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제간 연계되어야 한다. KGS가이드(가스안전공사)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업무

운영규정(에너지관리공단)을 개정·시행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필한 검사항목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연료전지 중복 검사 항목 해소로 기업의 비용이 절감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벤처·이노비즈에 대한 인증기준 통합

벤처·이노비즈 인증은 제도는 유사하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이 상이하다. 벤처인증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이노비즈인증은 ‘중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있다.

벤처-이노비즈 인증제도 비교

| 구 분 |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
| 연구 개발비 인증 기준 | - 연간 연구개발비 최소 5천만원이상, R&D 집약도 5%이상 | - 재무재표상의 매출액 대비 R&D 집약도 - A(20%~), B(10~20%), C(3~10%), D(~3%), E(해당없음) 등급제로 평가 |
| 연구 개발비 산정 기준 |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 | - 대차대조표상의 개발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 연구비, 개발시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
| 요 건 | 벤처투자기업 or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or 연구개발기업 | 업력 3년이상 and 기술혁신시스템평가 우수 and 개별보유기술평가 B등급 이상 |
| 인증 기관 | 기보, 중진공, 캐피탈협회 | 중소기업청(기보에 위탁평가) |
| 업 력 | 제한 없음 | 3년 이상 |
| 지원 내용 | - 창업후 3년내 법인/소득세 50% 감면 | - 기술신보 보증지원: 기술평가보증 100%전액(일반기업 85%) |

| 구 분 |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확인후 4년내 재산등록/취득세 감면 - 창업후 5년간 재산세/증토세 50% 감면 - 코스닥 상장 심사우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 우대(가점)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가점) 등 |

이원화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획득·갱신 심사시에 기업이 자료를 이중으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17,514개사, 이노비즈 기업은 15,668개사로 나타났으며, 이중 중복기업은 7,692개사(46%)에 이르고 있다.(2009.5.기준)

벤처인증제도와 이노비즈인증제도를 상호 호환성 있게 운영하여 우선적으로 인증기준이 상이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중복인증기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4. 표시제도와 연계 필요

인증제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다. 인증제도의 개혁은 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이 도외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부분의 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에서는 이러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품질표시 등 표시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표시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시제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규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허위나 부실한 인증을 행한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강제인증제도에 있어서 인증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허위나 부실한 인증표시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피인증기업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1. 기준인증제도에 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

기준·규격 및 검사·검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기준인증제도는 경제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업활동이나 소비활동에 대해서 비용의 상승이나 선택범위의 한정 등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인증을 제도화하고 운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등 각각의 제도가 본래 상정하고 있는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여 해당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인증제도를 선진화함에 있어서 개별 제도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감독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청되며 사업자의 자기확인·자기승인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로 이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품별 기준인증제도가 글로벌화, 통일화되어 감에 따라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확보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준인증제도는 그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도 매우 추상적인 관점에서 기준인증제도를 연구하였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향후 기준인증제도를 연구·검토함에 있어서 몇가지 기본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향후 검토과제

우선, 기준인증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요소들과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법률적 행위를 세분화하여 각각의 법적 성격들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기준인증제도는 기준의 설정을 시작으로 기준적합성평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의 구현이라는 일련의 연속된 프로세스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기준의 설정은 행정입법적 관점에서, 검사·검정은 이를 확인하는 사실행위로서, 적합성평가는 이른바 재량판단의 과정으로 하고, 기준인증의 발급은 공증적 성격을 가지는 등 그 법률적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기준인증과정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념요소들이 어떤 법률적 성격을 가지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준인증제도를 기술장벽의 일종으로 보는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국내에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국제표준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표준화 및 기준인증제도의 국제적 동향 파악을 위한 새로운 정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검토가 요청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술기준, 기준인증시스템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창수, 표준과 인증의 이해, 대광서림, 2001, 11면.

김병기, “국가표준체계의 정합성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중앙법학』 제10집제1호, 중앙법학회, 367면

DIN, Dokumentationswesen ; Norm, 2002

Council Resolution of 7 May 1985 on a new approach to technical harmonization and standards(85/C 136/01)(Official Journal C136, 04/06/1985)

Council Resolution of 21 December 1989 on a global approach to conformity assessment(90/C 10/01)(Official Journal C010, 16/01/1990)

93/465/EEC : Council Decision of 22 July 1993 concerning the modules for the various phases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the rules for the affixing and use of the CE conformity marking, which are intended to be used in the technical harmonization directives(Official Journal L220, 30/08/199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pproach Directive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3) 240 final], Brussels, 7.5.2003

Council Resolution of 10 November 2003 on the Communic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Approach Directives’(2003/C 282/02)(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282, 25.11.2003)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 강제인증 법정임의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3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
| 건설기계관리법 | 법 제 3 조 (등록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 법정강제 (행정처분) | 건설기계에 따라 형식승인, 형식신고 대상 건설기계로 구분하여 운영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증의 성격 | 인증의 특징 | 관련부처/ 인증기관 |
|-----------|--|-------------------|--------|--|-------------------------|
| | ②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 |
| 건축법 | 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내화구조 인정제도 | 법정강제 | 내화구조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장품질관리확인파 시험(시험체 제작)에 합격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
| 계량에 관한 법률 | 제12조 (계량기의 형식승인) ① 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 |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 법정강제 |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형식승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 | | <p>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고, 형식승인 받은 계량기는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p> | <p>/한국기기 유화시험 연구원</p> |
|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p> | <p>법 제17조 (용기등의 검사)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 <p>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p> | <p>법정강제</p> | <p>목적 :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시행일 : 1973. 2. 7 인증대상 : 용기,</p> | <p>지식경제부/ 한국가스 안전공사</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 | | 냉동기, 특정설비에 대한 강제인증 | |
| 공 연 법 | 제12조 (무대시설 안전진단등) 공연장 운영자는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설계검토,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 법정강제 | 일반적인 인증제도는 품목중심의 제도인 것에 비하여 본 인증제도는 상부시설(조명시설, 음향시설, 막시설, 방화막) 하부시설(오케스트라리프트, 회전무대, 승강무대, 이동무대)의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건설기술관리법 |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 설계 등의 표준화 | 법정강제 | | 국토해양부장관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 | |
|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 <p>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p> | <p>순환골재의 품질인증</p> | <p>법정임의</p> | | <p>국토해양부장관</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기술개발촉진법 | <p>제 6 조 (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① 신기술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기술이 신기술인증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증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p> | 신기술의 인증 | 법정강제 | 신기술에 대한 인증과 지원 | 지식경제부장관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농산물 품질관리법 | <p>제 5 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 야 한다.</p> <p>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 관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 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p>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 를 알려야 한다.</p> <p>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하</p> |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법정임의 | |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여야 한다.</p> <p>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⑦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p> <p>⑧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⑨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계획 등을 변경하면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p> | | |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⑩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 | | | |
| <p>농업 기계화촉진법</p> | <p>제12조 (안전관리) ①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물부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나 수입업</p> | <p>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관리</p> | <p>법정강제</p> | | <p>농림수산물부령 식품부장관</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자가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p> <p>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p> | | |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⑨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안전장치 부착 확인 방법·절차,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 | | |
| <p>대기환경보전법</p> | <p>법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p> | <p>자동차배출가스 인증 및 정밀검사</p> | <p>법정강제</p> | <p>제작차 인증은 자동차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정밀검사는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p> | <p>환경부/국립 환경과학원</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 <p>자 받아야 하는 검사제도. 자동차 제작자는 제작차에 대하여 배출가스인증과 소음인증을 포함한 환경인증은 모두 취득하여야 함.</p> | |
| 도시철도법 | <p>제22조 (표준규격)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고, 이를 도시철도차량 또</p> |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 및 안정기준 | 법정임의 | | 국토해양부장관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는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2조의2 (안전기준) ① 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p> <p>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p> | | | |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제22조의2 (안전기준) ① 도시철도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 | | |
| 먹는물관리법 | 제36조 (기준과 규격)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의 |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 법정강제 | 검사기관이 품질검사기관과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점사 신청자는 품질검사기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으로 신청 품질검사성적서 | 환경부/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p> <p>제37조 (표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p>와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수기 제조업·수입 판매업의 신고</p> | |
| <p>물류정책기본법</p> | <p>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p> | <p>물류회계의 표준 및 종합물류기업의 인증</p> | <p>법정강제</p> | <p>기업물류비 산정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 <p>국토해양부장관</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38조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류 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2.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것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류비 관련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2. 영역별·기능별 및 자가·위탁별 물류비의 분류 3. 물류비의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4.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p> | | | | |
| 방위사업법 | <p>제26조 (표준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표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 산업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군수품의 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며,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 군수품의 표준화 | 법정강제 |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 | 방위사업청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또는 해제, 군수품 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
| <p>부품·소재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p> | <p>제25조 (신뢰성인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인증분야 또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p> | <p>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p> | <p>법정임의</p> | <p>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p> | <p>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p>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③ 신뢰성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소관 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의 제품명, 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가 계속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고</p> | | | |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p> <p>⑦ 지정인증기관과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신뢰성인증 또는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평가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⑧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
| <p>산업기술혁신 촉진법</p> | <p>제16조 (신제품의 인증) ① 정부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p> | <p>신제품 인증</p> | <p>법정임의</p> | <p>1.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p> <p>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정보·시</p> | <p>지식경제부 장관</p>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임을 표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p>설·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p> <p>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인증된 신제품에 대한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p> | |
| <p>산업디자인 진흥법시행령</p> | <p>제16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p> | <p>우수산업디자인 표지의 사용기준</p> | <p>법정강제</p> | | <p>지식경제부 장관</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여만 사용할 것</p> <p>2. 선정상품의 외관·기능 등 상태가 선정 당시와 동일할 것</p> <p>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p> <p>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하여 사용할 것</p> <p>가. 당해 상품</p> <p>나. 당해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p> <p>다.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p> | | | | |
| 산업안전보건법 | 제33조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 조치 등) 및 동법 제35조(보호구의 검정)에서 정한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및 보호구를 대상으로 구조, 재질 및 성능 등을 시험하여 제작 형식을 승인함으로써 이후 생산 또는 수입될 동일규격 및 동 |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 법정강제 | | 한국산업 안전공단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일형식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제도 | | | | |
| 산업표준화법 | <p>제15조 (제품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제품과 서비스의 인증 | 법정임의 | 산업표준화에 대한 일반법 | 지식경제부장관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 (서비스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서비스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보증서 또는 홍</p> | | |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보물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선박안전법 | <p>법 제18조 (형식승인 및 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p> |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 법정강제 |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아야 하며, 선박안전법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 선박안전 기술공단 |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p>법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p>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 법정강제 | 검정은 형식승인을 득한 소방기기에 대하여 실시하 | 소방방재청/ 한국소방 검정공사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 | | <p>며 형식승인한 소방기구의 구조, 성능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합격표시를 부착하는 제도로서 사전제품검사와 사후제품검사로 구분됨</p> | |
| <p>소 음 · 진 동 규 제 법</p> | <p>법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p> <p>법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p> | <p>자동차 소음 인증제도</p> | <p>법정강제</p> | <p>제작차에 대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감사받아 인증받는 제도</p> | <p>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p>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p> | | | | |
| <p>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p> | <p>제13조 (품질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p> | <p>소프트웨어 품질인증</p> | <p>법정임의</p> | <p>신청 후 계약체결에 의하여 인증 진행 고객이 사용하게 될 실제 운영환경의 테스트베드에서 시험 수행 SW품질관련 국제 표준(ISO/IEC 9125,12119,14598)에 기반하여 시험 수행 기존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인</p> | <p>지식경제부/ 한국산업 기술시험원</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 | | 증)과 산업용소프트웨어인증(ES인증)을통합하여 인증제도를 운영 | |
| <p style="text-align: center;">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p> | <p>제26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 ① 제 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 인증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 <p style="text-align: center;">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인증</p> | <p style="text-align: center;">법정강제</p> | <p>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대한 기준</p> |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환경 과학원</p>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26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 | | |
| <p>식품산업진흥법</p> | <p>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할 수 있다.</p> <p>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p> | <p>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p> | <p>법정임의</p> | <p>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p> | <p>농림수산식품부장관</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p> | | | | |

| 법 륵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 | | | |
| <p>식품위생법/ 시행령</p> | <p>제 9 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p>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p> | <p>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p> | <p>법정강제</p> | <p>의무적으로 HACCP를 도입,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에 정해져 있으며 의무 적용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음</p> | <p>식품의약품 안전청</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p> | | |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 | | | | |
| <p>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p> | <p>제12조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인증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건축물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이하 “건축물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p> <p>제13조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①</p> | <p>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 및 설비의 인증</p> | <p>법정임의</p> | <p>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 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 가표준기본법』 제 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 되도록 하기 위하 여 설비인증기관 에 대하여 표준화</p> | <p>지식경제부 장관</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 | 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완성검사: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에 | 승강기 안정검사 | 법정강제 | | 행정안전부장관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3. 수시검사: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p> <p>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p> | | | |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대하여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13조의2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 | | |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거나 보수·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
|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p> | <p>제18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신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p> | <p>가스용품의 검사제도</p> | <p>법정강제</p> | <p>가스용품의 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되며, 생산단계검사에서는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종합공정검사” 중에서 선택</p> | <p>지식경제부/ 한국가스 안전공사</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 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 | | | |
| 약사법 |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①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보건 |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 법정강제 | 제조판매품목과 수입판매품목은 품목별로 품목허 | 식품의약품 안전청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이하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외의 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은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p> | <p>및 신고,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p> | | <p>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여야 함</p> |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④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법 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①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의약품등을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를 수입할 수 있다.</p> <p>③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p> | | |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 | | | |
| <p>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p> | <p>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 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 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 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 조업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 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안전인증기관으 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p> <p>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 6 조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등) ①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하는 자(대한민국으 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안</p> | <p>공산품 안전인증제도</p> | <p>법정강제</p> | <p>안전인증을 획득 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신청제 품에 대한 형식시 험과 공장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 며, 인증 취득 후 에도 정기적인(연 1회이상) 제품검 사와 공장심사가 진행 어린이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 품 안전관리법에 서 어린이 놀이시 설 안전관리법으 로 2008년 2월 변</p> | <p>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화학 시험연구원</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매 출하 물량별 또는 매 수입 물량별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 | 경되었음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 <p>법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법정강제 | 등급라벨은 냉장고, 에어컨,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가정용가스보일러의 경우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제품의 전면 또는 측면(세탁기는 윗면 가능)에 부착되어 있고 조명기기는 제품의 개별포장과 전체 포장물에 표시 | 지식경제부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4. 에너지의 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 방법 6. 그 밖에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법 제 6 조 (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 이상의 제조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제조품목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품목허가를 |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 및 GMP 인증 | 법정강제 | 의료기기는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품으로써 제조 또는 수입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또는 신 | 식품의약품 안전청/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받거나 제조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 <p>법 제14조 (수입업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p> | | | <p>고)와 영업장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심사</p>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p> | <p>제12조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임산물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 <p>임산물 품질인증제도</p> | <p>법정임의</p> | <p>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품질·자재관리·공정관리·제조설비관리 등 품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 <p>산림청장/ 산림과학원</p> |
| <p>자동차관리법</p> | <p>법 제30조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p> <p>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p> | <p>자동차부품 자기인증</p> | <p>법정강제</p> | <p>제조사가 자율적인 시험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되 리콜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제작사의 시간적·경제</p> | <p>국토해양부/ 교통안전 공단</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야 한다.</p> <p>② 부품제작자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부품제작자들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⑤ 자동차제작자들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그 자동차에</p> | | | <p>적 부담이 대폭 경감됨</p>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p> | | | | |
|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p> | <p>법률 제25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등급의 유지·관리,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품질·등급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 <p>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p> | <p>법정강제</p> | <p>재활용이 곤란하여 단순 소각, 매립되던 혼합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화하여 에너지 절약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가 적합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폐플라스틱의 자원화에 기여하기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p> | <p>환경부/한국 환경자원 공사</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법 제 3 조 (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 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 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 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 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 다)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 | 법정강제 | 전기용품안전인 증제도란 전기용 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인 증제도로써 안전 인증을 받아야 제 조·판매를 할 수 있는제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제33조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 연구 또는 수출용 전기통신기자재 등 대통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법정강제 |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시 험기관으로부터 신청제품의 시험 을 받고 인증기관 (전파연구소)으로 부터 인증 | 방송통신 위원회/ 전파연구소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 | | | |
| <p>전력기술관리법</p> | <p>제 9 조 (전력기술기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검사·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p> | <p>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기준</p> | <p>법정강제</p> | <p>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 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p> | <p>지식경제부 장관</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 | | |
| 전자거래기본법 | 제24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기술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등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 전자거래의 표준화 | 법정임의 |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사업을 지원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 지원 | 지식경제부장관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 | | | |
| <p>전파법</p> | <p>제24조 (검사) ①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허가증에 적힌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p> | <p>무선설비기기 검사</p> | <p>법정강제</p> | | <p>방송통신위원회</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p> <p>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시기에 외국을 항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선국,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p> | | |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증의 성격 | 인증의 특징 | 관련부처/ 인증기관 |
|--------------|---|-------------------|--------|-------------------------|----------------|
| | 우에는 정기검사 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 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 | | |
| 정보화촉진 기본법 | 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1.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보존 및 전송 2. 지식정보자원의 공동활용 3. 그 밖에 지식정보자원의 개발·활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 법정강제 | 『저작권법』 등 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 행정안전부 장관 |
| 주택법 시행령 | 제21조의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 |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 법정강제 |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 | 국토해양부/ 한국건설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중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p>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장품질 관리확인과 품질 시험(시험체 제작)에 합격.</p> | <p>기술연구원</p>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③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는 주택법제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p> <p>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p> <p>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해양</p> | | | |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p> <p>2.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p> | | | | |
| 주차장법 | <p>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p>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법정강제 | 기계식주차장 | 국토해양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p> | | | | |
| <p>축산물가공 처리법</p> | <p>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p> | <p>축산물 HACCP</p> | <p>법정강제</p> | <p>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p> |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 | | | |
| <p>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규칙</p> | <p>제 9 조 (인증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 <p>친환경농산물의 인증</p> | <p>법정임의</p> | | <p>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p>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5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국내·외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 | 법정임의 | | 관련부처 (정부) |
| 화장품법 | 제 4 조 (안전성 심사등) 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제2조제2호 각목에 규정된 효능·효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심사 | 법정강제 |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전에 그 원료의 성분내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대상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 | | | |
| 항공법 시행규칙 | <p>제38조의2 (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p> <p>1.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p> | 항공기 | 법정강제 | 항공기의 항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생산,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 요구사항에 대 | 국토해양부/ 항공안전 본부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받은 기술표준품</p> <p>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p> <p>3.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p> <p>4.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그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p> | | | <p>한 적합성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서 승인, 허가, 제한, 금지 등의 법적 처분을 함</p> | |
| <p>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p> | <p>법 제10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p> | <p>항공기부품</p> | <p>법정강제</p> | <p>항공기관 관련 부품 등을 제작·판매 및 수출을 하는 자는 생산착수 전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록 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설계 및 생산 단계 등 전 공정</p> | <p>지식경제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p> <p>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p> | | | <p>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최종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 정부로 부터 검사 합격증을 교부받아야만 품목을 유통할 수 있는 제도</p> |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시설·방법·절차 및 면제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규칙 제11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p> | | | | |
| <p>해양환경관리법</p> | <p>법 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③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제외한다),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이하 “형식승인대상설비”라 한다)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p> | <p>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p> | <p>법정강제</p> | <p>기름등 오염물질 등의 해양 또는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형식승</p> | <p>국토해양부/ 선박안전 기술공단</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⑥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형식승인대상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p> | | | <p>인 및 검정을 실시하여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p> | |
| <p>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 <p>제20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p> | <p>환경성적표지의 인증</p> | <p>법정임의</p> | <p>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p> | <p>환경부장관</p>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p> | <p>제10조 (품질인증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구매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p> |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p> | <p style="text-align: center;">법정임의</p> | | <p style="text-align: center;">지식경제부 장관</p> |

【 부 록 】 기준인증제도 조사결과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
|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p> | <p>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p> | <p>환경 측정기 정도 검사</p> | <p>법정강제</p> | <p>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p> | <p>환경부장관/국립환경과학원</p> |

| 법 률 | 조 문 내 용 | 인 증 명 칭 | 인 증 의 성 격 | 인 증 의 특 징 | 관 련 부 처 / 인 증 기 관 |
|-----|---|---------|-----------|-----------|-------------------|
| | <p>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 | | | |